
한일관계사학회

제208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23년 6월 10일(토) 오후 2~6시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B2 세미나실

차 례

사회 : 현명철(서울대학교)

제1발표	
고려 말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 및 그 해석에 관한 선행연구의 비판적 고찰 - 고려 우왕 2(1376)년 9월 전후를 중심으로 -	발표 : 이영(방송통신대학교) 토론 : 송종호(독립연구자)
제2발표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18세기의 역사서술 : 新井白石 과 對馬藩의 기록을 중심으로	발표 : 이해진(동국대학교) 토론 :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제3발표	
박사학위논문 소개-근세 조일 관계와 쓰시마 번의 재판역-조일 외교 절충 에서의 재판 역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 : 이형주(국민대학교) 토론 : 허지은(서강대학교)

제1발표

고려 말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 및 그
해석에 관한 선행연구의 비판적 고찰 - 고려
우왕 2(1376)년 9월 전후를 중심으로 -

발표 : 이영(방송통신대학교)

토론 : 송종호(독립연구자)

【제1주제】

**고려 말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 및 그 해석에 관한
선행연구의 비판적 고찰
- 고려 우왕 2(1376)년 9월 전후를 중심으로 -**

- I. 서론
- II. 선행연구의 재검토
 - 1. 김기섭의 견해
 - 2. 나종우의 견해
 - 3. 이영의 견해
- III. 목은 이색의 왜구 침공의 제Ⅲ단계
 - 1. 27개월 동안 지속된 침공
 - 2. 침구 지역의 급증 및 공격적인 군사 행동
 - 3. 기병을 활용한 내륙 깊숙한 침공
- IV. 결론

I. 서론

고려 말 왜구는 중국 대륙에서의 원명(元明)의 왕조 교체라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일대 변동기에 전개된 역사 현상이다. 이는 고려는 물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삼국의 정치·경제·외교·군사·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지대(至大)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왜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국사(一國史)의 범주를 초월해 이국사(二國史) 내지 삼국사(三國史)의 상호유기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본은 물론 한국 역사학계의 왜구사 연구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 왜구 관련 사료를 정리하고 번역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뿐 아니라 사료 해석에 있어서조차 적지 않은 오류가 존재하며, 그러한 잘못된 왜구 이해가 여전히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고려 말 왜구가 고려 왕조 몰락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본 고에서는 고려 말 왜구 연구자들이 제시한 바, <고려 말 왜구 침구의 제(諸) 단계>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그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자 한다.

학문적인 가치가 큰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착안하지 못한, 참신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행 연구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는, 그 결론의 옳고 그름과는 별도로, 고려 말 왜구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제기를 포

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학문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I. 김기섭의 견해

경인년(1350) 이후 고려 멸망 때까지 이어진 고려 말 왜구는 시종 일관되게 다수의 집단이 매년 연속적으로 침구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¹⁾ 예를 들면 고려 말의 고관(高官)이며 유종(儒宗)인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후세의 편찬사료인 『고려사』등 정사(正史)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왜구 관련 사료를 시로 남기고 있다.²⁾ 이 시에서 그는 왜구의 침구 양상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³⁾

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지정(至正) 경인년 이래로 일본 섬 오랑캐들이 침입하여 ㉞밤에는 작란(作亂)하다가 날이 밝으면 몰래 곧 달아나므로 나라에서 가볍게 여기고 걱정거리로 삼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㉞대낮에도 깊숙이 들어와 열흘 혹은 한 달 동안이나 멋대로 횡행하여 바다 근처의 민가는 폐허가 되어버렸다.⁴⁾

여기서는 이색의 인식과 달리, ㉞의 (밤에 작란하다가 날이 밝으면 몰래 곧 달아나는) 단계와 ㉞의 (대낮에도 깊숙이 들어와 열흘 혹은 한 달 동안이나 멋대로 횡행하는) 것의 두 단계로 묘사하고 있다. 이 ㉞은 이색이 분류한 제 I 단계, ㉞은 제 II 단계에 상응한다.

그리고 왜구 연구자들 또한 시기에 따라 왜구 침구의 양상 변화를 분류하고 그 배경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김기섭은 “공민왕 21(1372)년부터 왜구의 활동이 최극성기에 접어들고 있었다.”⁵⁾고 하며, 1372년 이후의 규슈(九州) 지역의 정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필자는 고려 말 왜구의 침구 양상이 다음과 같이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㉞ 활발하게 침구→㉞소강상태→㉞다시 활발하게 침구→㉞소강상태→㉞또 다시 활발하게 침구→㉞최극성기→㉞소강상태>이다. 이영「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동북아 문화연구』제31집, 2012년). 뒤의 <표15> 「경인년 이후의 왜구 침구표」를 참조. 그리고 그러한 고려 말 왜구의 침구 양상이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 배경에는 규슈 지역의 군사 정세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영「여말-선초 왜구 발생의 메카니즘 -왜구의 실체에 관한 용어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중세사연구』34호, 2012년 12월)을 참조.

2) 『목은시고(牧隱詩藁)』 중 왜구와 관련된 시는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50여 수에 달한다.

3) 예를 들면 그는 「산중요(山中謠)」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내 일찍 들으니 해적이 출몰하여 때때로 수촌(水村)을 공격한다 하였네.

I. 맨 처음엔 밤이면 해안을 올라와 담장 넘어 서절구투(鼠竊狗偷)에 그쳤는데 II. 중간에 교만을 떨며 안물러가고 별건 대낮에 평원을 횡행하다가 점차 우리 관군과 감히 서로 맞 대항하며 새벽부터 황혼까지 북치며 함성을 질러댔지.

나는 그때 다른 세상일을 들은 듯 여기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 아손들과 놀았었네.

그런데 III. 연래(年來)엔 능곡(陵谷) 위치가 문득 바뀌어 적들이 날뛰어서 장차 우리를 병탄(併呑)하고자.” (후략) 『목은시고 제26권』. 민족문화추진회 간. 이처럼 I, II, III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4) 권37. 전라도 장흥 조.

5) 김기섭「14세기 왜구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한국민족문화』제9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년 10월).

A. 1370년대에는 왜구의 발호가 극성을 부리던 무렵으로 懷良親王이 今川了俊에 의해 태재부를 뺏긴 1372년(공민왕 21년)부터 왜구의 활동은 최극성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회량친왕의 征西府는 筑後高良山, 肥後菊池로 후퇴하면서도 끈질기게 반항함에 따라 구주 전역이 전란 속으로 들어가서 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㉔이러한 구주 지역의 정세는 왜구의 준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㉕이 시기에 와서 주목되는 사실은 왜구의 약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온다든가, ㉖기병을 사용하면서 대규모화되어 감으로써 그 피해가 커져 갔다.”⁶⁾

즉, 왜구의 침구를 ‘최극성기’와 ‘그 전 단계’의 두 단계로 분류하고, 최극성기는 1372년부터 시작되며 그 기준을 ‘왜구의 내륙 침공’과 ‘기병의 사용을 통한 대규모화’에 두었다.

필자는 ㉔에서 왜구의 발호를 남북조 내란기의 규슈의 군사 정세와 연동시켜 언급한 것은 탁견(卓見)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㉕와 ㉖에서 왜구의 약탈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륙 깊숙이까지 왜구들이 침투하고 기병을 사용해 대규모화되어간 시기를 ‘1372년 이후부터’라고 한 것에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그가 최극성기의 시점(始點)으로 파악한 공민왕 21(1372)년부터 우왕 원(1375)년까지의 왜구의 침구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표1> 공민왕 21(1372)년의 왜구 침공 양상⁷⁾

	월	내 용
①	2	왜구가 배주(白州, 황해도 연백)를 노략질하였다.
②	3	왜구가 순천군 · 장흥군 · 탐진군 · 도강군(강진군) 등지를 노략질하였다.
③	4	왜구가 진명창(원산 동남방에 위치한 조창)을 노략질하였다.
④	6	왜구가 강릉부 및 영덕현과 덕원현의 2개 현을 노략질하였다.
⑤		왜구가 안변 · 함주를 노략질했다.
⑥		왜구가 동계 · 안변 등지를 노략질하여 부녀자들을 사로잡고 창고의 쌀 10,000여 석을 약탈했다.
⑦		왜구가 또 함주와 북청주를 노략질하였는데, 만호 조인벽이 군사를 매복하여 그를 크게 쳐부수고, 70여 급의 머리를 베었다.
⑧		왜구가 홍주(洪州)를 노략질하였다.
⑨	7	기미 왜구가 양광도(楊廣道)를 침략하였다. (『고려사』)
⑩	9	양광도순문사 조천보가 용성에서 왜구와 싸우다가 패하여 사망했다.
⑪	10	신사 왜선 27척이 양천(陽川)에 들어와 3일을 머무르니 여러 장수가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싸웠으나 패했다. (『고려사』)

이 해에는 2, 3, 4, 6, 7, 9, 10월의 7개월간에 걸쳐서 11차례의 침구 기사가 있는데, 특히 6월에는 5차례나 침구하는 등 6월에 약 50%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3월에 4곳, 6월에 강릉부와 영덕현, 덕원현의 3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다 한차례 쳐들어와서 1-2 곳을 침구하고 있다. 침구 대상 지역은 대부분 바다와 접한 해안 지방이었다.

특히 진명창과 강릉부 등 동해안 지역에 침구해서 쌀을 1만여 석이나 약탈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9월에 고려군이 왜구들과 싸워 지휘관인 양광도 도순문사가 전사하였고, 10월에는 양천(현, 서울 양천구 일대)에 27척의 선단으로 침구해 고려의 여러

6) 앞의 주(5) 논문 참조.

7) 이하 모든 <표>의 내용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고려사절요』에 없는 경우에 『고려사』라고 표기하였음.

장수들이 싸웠지만 패할 정도로 왜구의 전력은 강했다. 다음 해의 침공 양상을 보자.

<표2> 공민왕 22(1373)년의 왜구 침공 양상

	월	내 용
①	2	왜구가 구산현을 노략질했다. 경상도 도순문사 홍사우가 수백 명의 목을 베고, 획득한 병장기를 바쳤다.
②	3	왜구가 하동군을 노략질하였다.
③	4	무술 왜구가 가까운 섬에 있었으므로 평리(評理) 유연(柳淵)에게 명령하여 동강(東江)에 나가 진(鎭)을 설치하게 하였다. (『고려사』)
④	6	왜구의 배가 동강과 서강에 모여서 양천을 노략질한 뒤 마침내 한양부에 이르러 집들을 불태우고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하였다. 수백 리가 소란하고 어수선하였으며, 경성이 크게 진동하였다.
⑤		왜구가 교동(喬桐, 교동도)을 함락시켰다.
⑥	7	<공민왕 22년(1373)> 7월 왜가 서강(西江)에 침입하자 성(城) 안의 각 호(烟戶)를 모아 방어에 나가게 하였다. (『고려사』)
⑦	9	왜구가 해주(海州)를 노략질하고 목사 엄익겸을 죽였다.

공민왕 22(1373)년에는 2, 3, 4, 6, 7, 9월의 6개월간에 걸쳐서 7차례 침구했다. 매 차례 침구할 때마다, 그 침구 지역 수는 ④의 6월에 양천과 한양부의 두 곳을 제외하면 모두 1곳이며 역시 모두 다 해안 또는 한강의 하안(河岸)이다. 2월에 침구한 왜구들은 수백 명이 죽음을 당했지만, 6월에는 동강과 서강 즉 개경 인근까지 배를 타고 와서 위세를 과시하고 양천(서울 양천구 일대)과 한양부에서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며 교동(도)을 함락할 정도로 대규모 병력으로 쳐들어왔다. 이어서 공민왕 23(1374)년의 왜구 침공 상황을 보자.

<표3> 공민왕 23(1374)년의 왜구 침공 양상

	월	내 용
①	3	경상도관찰사가 왜구가 병선 40척을 격파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다고 보고하였다.
②		왜구가 안주(安州)를 노략질하자 목사 박수경이 힘써 싸워서 이들을 물리쳤다.
③	4	임자 왜선 350척이 경상도 합포를 노략질하여 군영의 병선을 불태웠고, 장졸 중 사망한 자가 5,000여 인이나 되었다. 조림을 파견하여 도순문사 김형을 죽인 후에 사지를 베어 여러 도에 보냈다. (『고려사』)
④		서해도 만호 이성과 부사 한방도 · 최사정이 목미도(木尾島)에서 왜구와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
⑤		왜구가 자연도(紫燕島)를 노략질하였다.
⑥	5	왜구가 강릉과 삼척을 노략질하고 또한 경주와 울주 두 지역을 노략질하였다
⑦	8	8월 정유 왜구가 회양(淮陽)을 침략하였다. (『고려사』)
⑧	9	왜구가 안주(安州)를 노략질하였다.
⑨	12	왜구가 밀성(密城)에 침입하여 관청을 불태우고 사람과 물건을 노략질하였다.

이 해에도 3, 4, 5, 8, 9, 12월의 6개월간에 걸쳐서 총 9차례에 침구했다. 침구 지역 수를 보면 5월에 4곳을 침구한 것을 제외하면⁸⁾ 모두 평안북도의 안주를 두 차례 침공하는 등, 주로 해안 지방(안주, 목미도, 자연도)과 낙동강 유역의 하안(河岸) 지방인 밀성(양)을 각각 1곳씩 쳐들어왔다. 4월에 서해안(자연도)에 나타났던 무리들이 5월에 동해안(강릉 등)을 침구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은 별개의 집단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4월에 왜선 350척이 합포에 침입해 고려군 장졸 5천여 명이나 전사한 대패(大敗)를 당한 사건이다. 왜선의 규모나 고려군이 입은 피해 등을 생각하면 해적이라기보다 전문적인 군사 집단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우왕 원(1375)년의 왜구 침공 양상을 보자.

<표4> 우왕 원(1375)년의 왜구 침공 양상

	월	내 용
①	3	왜구가 경양현을 노략질하므로 양광도도순문사 한방언이 더불어 싸웠으나 패했다.
②	8	경상도부원수 윤승순이 왜구 20명의 목을 베었다.
③		왜구가 낙안과 보성을 노략질하였다.

8) 여기서 4곳이라고 하지만 강릉, 삼척과 경주, 울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한 집단이 두 차례 침구했든지 아니면 별개의 두 집단이 침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④		왜선이 덕적도(德積島)와 자연도(紫燕島)의 두 섬에 크게 집결하였다.
⑤	9	왜구가 영주(寧州)와 목주(木州) 두 지역을 노략질하였다.
⑥		왜구가 서주(瑞州)와 결성(結城)을 노략질하였다.
⑦	11	양광도안무사 박인계가 왜선 2척을 잡아서 이들을 섬멸하였다.
⑧	12	왜구가 양광도 연해의 주현을 침략하니, 판전의시사 김사보를 병마사로 임명하여 방어하게 하였다. (『고려사』)

이 해는 3, 8, 9, 11, 12월의 5개월간에 걸쳐서 총 8차례, 한 차례에 1-2곳을 침구해왔다. 섬(덕적도와 자연도)과 낙안과 보성, 영주(천안)와 목주(목천), 서주(서산)과 결성(홍성군 결성면) 등 해안 또는 바다에서 가까운 지역을 침구하고 있다. 3월에는 양광도 도순문사가 왜구와 싸워 패한다.

이상, 공민왕 21(1372)년부터 우왕 원(1375)년의 약 4년간에 걸친 왜구의 침구를 분석한 결과, 1년 중 약 5-7개월 동안에 걸쳐 주로 도서 해안 지방 내지는 해안에서 멀지 않은, 하천으로 연결된 하안 지방을 주로 침구했다. 이들 하안 지방은 내륙 깊숙한 곳이 아니며 강으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또 기병을 활용한 사료나 그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 차례 침구 시, 많은 경우 3-4곳, 보통 1-2곳을 쳐들어갔다. 그리고 왜구들은 당시 각 도(道)의 원수를 겸하면서 군사 업무를 총괄했던 도순문사가 지휘하던 군대와 싸워 이기고 있었으며, 350척의 선단에 승선한 병력으로 5천여 명이나 되는 고려군 장병들을 전사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사 집단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김기섭이 언급한 A의 ⑥ “이 시기에 와서 주목되는 사실은 왜구의 약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온다든가,”라고 한 언급은 침구 대상 지역이 거의 대부분 도서 해안 또는 하안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1372-75년의 4년간의 왜구 침구 양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350척의 배에 타고 있던 왜구들은 당연히 대규모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들이 고려군과 전투를 벌인 곳이 현재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합포(合浦)’였던 것, 그리고 왜구들이 합포 인근지역을 침공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특별히 기병의 이용이 필수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㉔의 ‘기병의 사용’에 대해서도 김기섭은 그 시기(始期)를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으로 생각할 때, ‘공민왕 21(1372)년’ 이후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초 기병 동원이 문헌상에서 확인되는 것은 별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왕 2(1376)년 10월이다.⁹⁾

이렇게 보면, 김기섭이 왜구의 최극성기의 시기(始期)로 지적했던 공민왕 21(1372)년에서 우왕 원(1375)년은 이색이 구분한 제Ⅱ단계, 즉 “관군과 감히 서로 맞대응하며”는 단계’에 해당하며, 제Ⅲ단계인 ‘주객(主客)이 전도(顛倒)되어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는 단계’라고까지 할 수 없다.

2. 나종우의 견해

김기섭은 왜구들이 내륙 깊숙이 침구하거나 기병을 활용한 이유로 “연해주군(沿海州郡)의

9) 이영「우왕 2(1376)년 10월, 왜구 최초의 기병(騎兵) 동원에 관한 고찰-임파현 전투(9월)와 행안산 전투(10월)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한일관계사연구』제80집, 2023년 5월).

미곡(米穀) 생산의 격감과 조운(漕運) 방식이 육운(陸運)으로 전환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¹⁰⁾ 고 하는 나종우의 견해를 인용했다.¹¹⁾ 나종우의 견해는 왜구의 침구 양상의 변화가 나타난 배경에 대하여, ‘고려 측의 왜구 대책에 왜구들이 대응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김기섭이 나종우의 견해를 인용한 것은 그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나종우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나종우는 왜구의 침구를 크게 ‘창궐기(猖獗期) 이전’과 ‘창궐기’의 두 단계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¹²⁾

<표5> 나종우의 왜구 침구의 시기 구분

창궐기 이전	삼국시대 - 고려 시대(1350년 이전)
창궐기	I 기 또는 초기 (충정왕 2, 1350년 - 공민왕 22, 1373년까지)
	II 기 또는 중기 (공민왕 23, 1374년 - 공양왕 4, 1392년까지)

앞에서 본 것처럼, 김기섭은 공민왕 21(1372)년을, 그리고 이 <표5>에서처럼 나종우는 공민왕 23(1374)년을 각각 왜구 침구 양상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해로 보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B.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㉔중기의 왜구는 초기의 왜구에 비해 연안에서 내지 깊숙이 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따라서 초기의 해안 지방의 약탈 방법에서 육지에 율아옴에 따라 전술도 바꾸어짐을 볼 수 있다. ㉔초기 침입 시에는 보이지 않던 기병이 보이는 사실이다. (중략) ㉔우왕 3년(1377) 황산강에서 김해부사 박위와 싸운 패가대만호라는 왜장(倭將)은 큰 말을 타고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략) 이상에서 볼 때 왜구는 말을 타고 내지 깊숙이까지 침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어째서 초기의 왜구가 해안 지대만을 습격했는데 중기에 들어오면서 내지(內地)까지 습격을 하게 됐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¹³⁾

나종우는 ㉔에서 왜구들이 내지 깊숙이 들어오는 시기를 막연히 ‘중기(1374년 이후)’라고 했을 뿐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㉔의 서술을 보면 그는 초기와 중기를 나누는 기준의 하나로 왜구들의 ‘기병을 활용한 내륙 깊숙한 침구’를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㉔사례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¹⁴⁾ 아마도 우왕 3(1377)년 5월¹⁵⁾을, 왜구가 기병을 최초로 활용한 시기로 이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기섭이 기병을 ‘왜구의 대규모화’로 이해한 반면, 나종우는 ‘내륙 침공’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㉔에서 나종우가 주장하는 ‘중기’ 즉 공민왕 23(1374)년 이후, 왜구

10) 나종우「고려 말의 왜구와 그 대책」(『한국중세대일교섭사연구』원광대 출판부, 1996년).

11)

12) 앞의 주(7) 나종우 박사학위 논문 99-117쪽. 소위 광개토대왕비문에 보이는 ‘왜’까지 ‘왜구’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이영「고려 말 왜구의 실상」(『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에피스테메, 2007년)을 참조.

13) 앞의 주(7) 나종우 박사학위 논문. 113쪽.

14) 앞의 주(7) 나종우 박사학위 논문. 113쪽.

15)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3년 5월.

가 내지 깊숙이 침투해왔다고 하지만, 앞의 <표3>과 <표4>에서 보듯이 공민왕 23년과 우왕 원(1375)년이 되어서도 왜구들은 내지 깊숙이가 아니라 여전히 도서 해안 또는 하안 지방을 침구하고 있다. 그가 왜구의 기병을 이용한 내륙 침공의 사례로 든 ①를 보더라도 패가대 만호가 싸운 ‘황산강’은 낙동강의 옛 이름이며 적장인 박위의 관직명도 ‘김해 부사’이다. 당시 두 무장이 싸운 전장은 낙동강 하류 일대의 오늘날의 김해시 부근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례를 가지고 왜구들이 내지 깊숙이까지 침구해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1. 5월. 왜적의 기병 700명, 보병 2,000여 명이 진주를 노략질하니, 양백연이 우인열 · 배극렴 · 한방언 · 김용휘 · 경의 · 홍인계와 함께 반성현(班城縣)에서 전투하여 13명의 목을 베었다.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¹⁶⁾

이 <사료1>의 ‘왜구 기병 700’이 문헌 사료에서 확인되는 바 최다(最多) 숫자다.¹⁷⁾ 진주 반성현(현재의 일, 이반성면)은 해안에서 불과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결코 내륙 깊숙한 곳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해안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내륙 깊숙한 곳’으로 볼 것이냐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지만, 반성현은 반드시 말(馬)없이, ‘도보’로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즉,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이용해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 예를 들면 다음 사례를 들 수 있다.

2. 왜구의 배가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에 모여서 양천(陽川)을 노략질한 뒤 마침내 한양부(漢陽府)에 이르러 집들을 불태우고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하였다. 수백 리가 소란하고 어수선하였으며, 경성이 크게 진동하였다.¹⁸⁾

공민왕 22(1373)년 6월, 즉 나종우의 분류에 의하면 아직 창궐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왜구들은 양천(현 서울 양천구 일대), 이어서 한양부(지금의 서울시내)까지 쳐들어와 약탈을 자행하였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영종도 인근 바다까지의 직선거리는 30km 가까이 된다. 그렇지만 왜구들은 자신들의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한양부에 가장 가까운 강안(江岸)에 배를 정박시키고 도보로 한양부까지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나종우가 공민왕 23(1374)년 이후 멸망 때까지를 왜구 창궐기의 제Ⅱ기 또는 중기라고 규정한 이유는 앞의 B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왜구의 기병을 활용한 내륙 깊숙한 지역으로의 침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그의 다음과 같은 왜구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언급을 보자.

16) 『고려사절요』 권31. 신우2. 우왕 5년 5월.

17) 우왕 6(1380)년, 즉 경신년에 침구한 왜구들로부터 말 1600여필을 노획했다, 고 하는 기사가 있지만 이 1600여필이 모두 다 일본에서 배로 수송해온 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8) 『고려사절요』 권329 공민왕4. 공민왕 22년 6월.

C. ㉔왜구는 해적이며 그들의 활동은 해상이나 또는 해안 지대이어야만 행동이 자유로운데 ㉔행동반경에 한계가 있고 위험이 훨씬 더 많은 내지 깊숙이까지 침입을 감행했다. ㉔그 주된 원인은 아마도 해상이나 연해의 주군으로서의 입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㉔왜구로 인하여 해안의 주군은 미곡 생산이 격감되었음은 추측할 수가 있다. (중략) ㉔이러한 건의가 채택된 것은 우왕 2년(1376) 윤9월의 ‘罷漕運’이라 한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㉔이와 같이 조운이 해운에서 육운으로 전환되니 해상에서 활동을 잃은 왜구가 내지 깊숙이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다.”¹⁹⁾

위의 내용에 따르면, 나종우는 왜구들이 한반도 내륙 깊숙이까지 침구하게 된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즉, 그는 <㉔왜구의 침구 - ㉔연해 주군의 미곡 생산의 격감 - ㉔조운에서 육운으로 정책 변화 - ㉔왜구의 기병을 활용한 내륙 침공>으로 순차적(順次的)·계기적(繼起的)으로 전개된 현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특히 ‘조운에서 육운으로의 정책 변화’가 ‘왜구들의 내지 침구’를 유발하였으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왜구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인식하고 있다.²⁰⁾ 이 부분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우선 ㉔에 대해 생각해보자. 해적이라고 해서 1년 365일을 해상에서 보내는 것은 아니며 그들도 ‘섬’이든 ‘해안 지방’이든 기본적으로는 육지를 근거지로 삼고 있다. 흔히 ‘왜구=해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나종우는 왜구를 물에서만 익숙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고려 말 왜구들이 취한 행동 중에는 그들이 고려 토벌대에 쫓겨 전세가 불리해지면 타고 있던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다수 사례에 확인된다.²¹⁾ 이는 당시 왜구들이 평지에서보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구의 주요 본거지인 대마도나 마쓰우라(松浦) 지방의 산악 지형을 생각하면 그들이 해상에서는 물론 내륙의, 특히 험준한 산악에서도 뛰어난 이동은 물론 전술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은 충분히 수긍된다.²²⁾ 대마도는 재래종 말인 ‘다이슈바(討州馬)’의 산지로 유명할 정도이며 왜구의 주요 구성원으로 알려진 마쓰라토(松浦党)의 무사들의 근거지인 마쓰우라 지방 사람들은 예로부터 원양(遠洋) 항해능력과 심해(深海) 잠수 능력 그리고 ‘기사(騎射)’ 즉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장기(長技)로 내세울 정도의 사람들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²³⁾ 따라서 왜구들이 해

19) 앞의 주(7) 나종우 논문 쪽.

20) 나종우는 “화기의 위력은 우왕 6년 진포 싸움과 정지의 남해 싸움에서 쾌승을 거둘 수 있었으며 따라서 화기의 사용은 고려말 치열하던 왜구를 격퇴하고 민생을 보호하며 국가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요소의 하나였다.”고 하고 있다. 앞의 주(7) 논문 122쪽.

21) 예를 들어 왜구 기병 활용이 최초로 확인되는 것으로 우왕 2년 10월에 전북 부안에 침구한 왜구의 보병과 기병이 행안산을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앞의 주(9) 이영 논문 참조.

22) 대마도는 ‘산도(山島)’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산악 지형이 그대로 바다로 침하(沈下)한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적이라고 해도 육지, 특히 산악 지형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목은 이색이 왜구들이 “**적들이 날뛰어서 장차 우리를 병탄하고자 맨발로 천 길 낭떠러지를 달려 올라가서 가시덤불 돌 모서리를 원숭이처럼 나는데...**” 『목은시고』 제26권 「산중요(山中謠)」라고 서술하고 있다.

23) 이에 관해서는 이영「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우왕 2-3(1376-77)년의 왜구를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24집, 2006년. 뒤에 『황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에피스테메, 2015)에 수록)을 참조.

적이므로 바다에는 익숙하지만, 육지 특히 평야나 산악 지형에서의 활동은 제한적인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수륙(水陸) 두 방면에서 모두 뛰어난 활동 능력을 지녔으며 장기간 지속된 남북조 내전으로 인해 게릴라전과 산악전 등에도 풍부한 경험을 지니게 된 전사(戰士)들이었다.²⁴⁾ 그래서 각 도(道)의 군사 지휘관인 도순문사(都巡問使)들이 지휘하는 고려의 정규군들도 그들과의 대적에서 쉽게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㉞는 이국땅인 고려 내륙 깊숙이 침투하면 고려군의 공격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짐으로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공이 가는 지적이다. 그런데 ㉠에서 ‘왜구의 내륙 침공의 주된 원인’으로 나종우는 ‘해상이나 연해의 주군으로서의 입구(入寇)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 그것은 ㉠의 ‘왜구로 인하여 해안의 주군은 미곡 생산이 격감되었던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공이 가지만, 그 이유로 나종우가 제시한 ㉠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나종우는 ㉠의 근거로 다음의 <사료3>을 들고 있다.²⁵⁾

3.〈신우(辛酉) 원년(1375)〉 윤9월에 도평의사(都評議司)에서 아뢰기를, “㉡각 도(道)의 주현(州縣)들이 여러 차례 왜란(倭亂)의 피해를 입어 쇠잔해지고 황폐하여 진 것이 아주 심하니, 바닷가 근처 각 관청의 상요(常徭)와 잡공(雜貢) 및 염세(鹽稅) 등을 ㉢전라도는 5년에 한하여 양광도와 경상도는 3년에 한하여 면제해 주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²⁶⁾

이 <사료3>은 『고려사』 지(志) 권제34. 식화3. 진흥의 우왕 원년 윤9월조의 내용이다. 그런데 『고려사절요』에는 우왕 원년 윤9월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둘 중 어느 것이 옳을까? ㉢을 보면 전라도가 최근에 왜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의 ㉡의 내용인 우왕 원년과 이전의 전라도 지방에 대한 왜구의 침구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6> 공민왕 9(1360)년 - 우왕 2(1376)년 윤9월 이전까지의 왜구의 침구 양상

	연도	월/일	침구 지역	사 료
㉠	1360	5/2	화미(군산), 옥구(군산)	『고려사』 세가 권제39. 공민왕 9년 5월
㉡	1361	2/22	구체적인 장소는 불명	『고려사』 세가 권제39. 공민왕 10년 2월
㉢	1362	3/13	흑산도	『고려사』 세가 권제40. 공민왕 11년 3월
㉣	1371	10/11	구체적인 장소는 불명	『고려사』 세가 권제43. 공민왕 20년 10월
㉤	1372	3/16	순천, 장흥, 담진, 도강(강진군)	『고려사』 세가 권제43. 공민왕 21년 3월.
㉥	1375	8/?	낙안(순천시), 보성.	『고려사』 권133. 열전 권제46. 우왕 원년 8월

여기서 보듯이, 우왕 원(1375)년에는 전라도에 대한 왜구의 침공은 단 한 차례 8월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봐서 그다지 충격이 컸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우왕 원년 이전에는 어땠을까? 공민왕 21(1372)년에 한 차례, 동왕 20(1371)년에 한 차례 침공해 왔을 뿐이다. 그리고 1362년부터 1371년까지의 무려 9년 넘는

24) 앞의 주(22) 논문 참조.

25) 앞의 주(7) 나종우 박사학위 논문. 111쪽.

26) 『고려사』 지. 권제34. 식화3. 진흥 조.

기간 동안 왜구들은 전라도를 단 한 번도 침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국가의 주요 재원이 라 할 수 있는, 각 관청의 상요와 잡공 및 염세 등을 우왕 원년에 면세해 줄 이유가 없다. 반면에 우왕 원년에 양광도와 경상도는 전라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²⁷⁾ 따라서 ⑥의 전라도가 양광도와 경상도의 3년보다 2년이나 더 장기간인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면세해줄 이유는 더 더욱 없다.

그러면 우왕 2(1376)년 1월부터 윤9월 이전까지의 전라도에 대한 왜구들의 침구 양상은 어 떤했을까? 다음의 <표7>을 보자.

<표7> 우왕 2(1376)년 1월 - 윤9월까지 의 전라도에 대한 왜구의 침구 양상

	월	침구 지역	특기 사항
①	1	구체적인 장소는 불명	전라도도안무사 하을지가 왜선 1척을 포획하였다.
②	7	전라도 원수영과 영산	왜구 20여 척이 원수영을 침략하고 다시 영산(나주시)을 노략질하여 아군 전 함을 불태웠다.
③	7	영암	전라도원수 유영이 왜구를 영암에서 물리쳤다.
④	7	낭산현과 풍제현	원수 유영과 병마사 유실이 힘껏 싸워 적을 물리침.
⑤	9	고부 · 태산 · 흥덕 · 보 안 · 인의 · 김제 · 장성	노략질하고 관아를 불사르다. ²⁸⁾
⑥	9	전주 · 귀신사(김제)	전주를 함락시키고 적이 물러나 귀신사에 주둔함. ²⁹⁾
⑦	9	임파현(군산시 임피면)	왜구가 임파현을 함락하고 다리를 철거해 스스로 굳게 지키는 것을 격파. ³⁰⁾

이 <표7>에서 보듯이, 전년인 우왕 원년에 단 1차례 있었던 왜구가 우왕 2(1376)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왜구의 전라도 지역에 대한 침공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즉, 1월부터 윤9월 이전, 즉 9월까지지는 무려 7차례, 확인되는 장소만 15곳에 달한다. 그리고 그 대부분 지역이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다. 그리고 9월에만 모두 10곳을 침공하고 있다. 특히 <김제 - 전주 - 귀신사 - 임파현>과 같은 비교적 먼 거리를 고려의 토벌대보다 먼저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다.³¹⁾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사료상 최초로 왜구의 기병 동원이 확인되는 것은 10월이지만, 9월 침구 당시 이미 기병을 동원한 것으로 생각된다.³²⁾

이것이 우왕 2년 윤9월에 <사료3>의 전라도에 대한 특별 면세 조치를 발표한 배경일 것이다. 따라서 고려 조정이 <사료3>의, 전라도에 대한 특별 면세 조치를 취한 것은 『고려사』의 우왕 원년 윤9월이 아니라 『고려사절요』의 다음 해인 우왕 2년 윤9월이 옳은 것이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취한 조치의 목적은 왜구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과 관청의 조세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있었다. 왜구의 약탈로 인해 수확한 미곡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니 이 지역 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왜구의 침구로 인해 입었던 인적 물적 피해 로 주민들이 거주지를 벗어나 타지방으로 이주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겠지만, 그렇 다고 해서 이 지역의 미곡 생산 자체가 ‘격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 C의 나중우의 언급 ①에서 ‘조운에서 육운으로의 정

27) 앞의 <표4>를 참조.

28) 『고려사』권133. 열전 권제46. 우왕 2년 9월조.

29) 『고려사절요』권30. 우왕 2년 9월조. “倭陷全州,牧使柳實與戰,敗績. 賊退屯歸信寺,實復擊,却之.”

30) 『고려사절요』권30. 우왕 2년 9월조.

31) 앞의 주 (9) 이영 논문 참조.

32)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앞의 주 (9) 이영 논문 참조.

책 변화’로 인해 왜구들이 해상에서는 약탈하기 어려워 내륙 깊숙이 들어왔고 그 결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다음 <표8>을 보자.

<표8> 고려군이 왜구와 싸워 크게 승리한 사례.³³⁾

	연월	내용	전장
①	64/05	경상도 도순문사 김숙명이 왜구 3,000명을 진해현(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일대)에서 공격하여 대파하고 승전보를 올리니, 왕이 옷과 술 및 금으로 만든 띠를 하사하였고,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에게도 차등 있게 벼슬을 주었다.	해안
②	73/02	홍사우는 공민왕 때 경상도 도순문사가 되어 합포를 진수하고 있었다. (중략) 왜구가 구산현(창원시 구산면) 삼일포를 노략질하자 홍사우가 가서 이를 격퇴하였다. 적이 흩어져 달아나자 이긴 기세를 타고 힘차게 공격하였더니 적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홍사우 휘하의 병사들이 사면(四面)에서 공격하여 200여 명의 목을 베어 얻었다. 물에 빠져 죽은 자도 1,000여 명이나 되었으며, 포로로 잡혔던 자를 빼앗아온 것이 10명이었고, 병장(兵仗)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해안
③	77/05	김해부사 박위가 황산강(黃山江)에서 왜구를 공격하여 패배시켰다. 처음에 왜선 50척이 먼저 김해의 남쪽 포구에 이르러 방을 붙여서 뒤에 오는 적에게 보여 이르기를, (중략) 복병이 나가고, 박위 또한 돌진하여서 가로막고 공격하니, 적이 낭패하여 스스로 갈로 찢거나 물에 빠져 거의 다 죽었다. 강주원수 배극림이 또 왜구와 더불어 싸우는데, 적의 괴수인 패가대만호가 보병으로 하여금 좌우를 호위하게 하고 말을 달려 앞으로 나오다가 말이 진창에서 돌아 멈추었으므로, 우리 군사가 맞서 공격하여 그의 목을 베었다.	하안
④	79/05	왜적이 기병 700명, 보병 2,000명으로 진주(晉州)를 노략질하니 양백연은 경상도상원수 우인렬, 도순문사 배극림, 한방언, 김용휘, 경의, 홍인계 등과 함께 반성현(진주시 일, 이반성면) ³⁴⁾ 에서 싸워 <왜적>을 크게 깨뜨리고 13급을 베었는데 잔당이 모두 산곡으로 달아나 숨었다.	해안
⑤	80/08	왜적의 배 500척이 진포(鎭浦) 입구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드디어 해안에 상륙하여 주군으로 흩어져 들어가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으니, (중략) 나세·심덕부·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처음으로 최무선이 제작한 화포를 사용하여 그 배를 불태우자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가렸다. 왜구가 거의 다 타죽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도 또한 많았다.	해안
⑥	80/09	마침내 대파하니, 시냇물은 모두 끓어져서 6~7일이 지나도록 색이 변하지 않아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모두 그릇에 담아 오래 가라앉힌 뒤에야 마실 수 있었다. 말 1,600여 필과 무수히 많은 병장기를 획득하였으며, 처음에 적이 우리에게 비해 10배나 많았는데 오직 70여 인만이 지리산으로 달아났다.	내륙
⑦	83/05	해도원수 정지가 남해현에서 왜구를 공격하여 크게 패배시켰다. 이때 정지가 이끌고 있던 전함이 겨우 47척이었는데, 나주와 목포에 머물고 있었다. 적선 120척이 크게 이르자 경상도 연해의 주군이 크게 놀랐다. (중략) 정지가 진군을 독려하여 박두양(朴頭洋)에 이르니, 적이 큰 배 20척에 배마다 정예병 140인씩을 태워 선봉으로 삼았다. 정지가 진공하여 크게 깨뜨리고 적선 17척을 불사르니, 뜬 시체가 바다를 뒤덮었다. 병마사 윤송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	해상

이 <표8>에서 보듯이 고려군이 왜구와 싸워 대승을 거둔 7 사례 중 2건(①·②)은 ‘조운의 육운화(陸運化)’ 정책이 발표된 우왕 2(1376)년 윤9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나머지 5건은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 5건 중 4건(③·④·⑤·⑥)은 왜구들이 기병을 동원했고 1건(⑦)은 해전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전체 7건 중, 내륙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전투는 이성계가 아지발도가 이끄는 경신년 왜구를 남원시 운봉읍 인월면에서 격파한 황산 전투(⑥)밖에 없다. 그 외에는 모두 다 해안이나 해안에서 멀지 않은 하안(河岸) 또는 해상에서 일어났다.

내륙 깊은 곳에서 전개된 황산 전투도 처음부터 왜구들이 내륙 침공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진포구 전투(⑤)에서 타고 왔던 배가 모두 불타버렸기에 어쩔 수 없이 내륙 깊숙이 들어온 결과였다. 따라서 나종우가 “조운에서 육운으로의 전환이 왜구들을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그것이 왜구들을 죽음의 길로 이끈 것이었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조하기 어렵다.

오히려 왜구들이 말을 활용해 내륙 깊숙이 침투했으나 고려군에 의해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기동력을 살려서 한반도의 내륙을 전전하고 있는 것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왜구들이 기병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내륙 깊숙이 침공해오기 시작한 것은 우왕 9(1383)년 5월에 있었던 정지의 남해 관음포 해전 바로 직후부터이다.³⁵⁾ 다음의 <표9>를 보자.

33)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였음.

34) 바닷가에서 약 10킬로미터 정도 내륙에 위치.

<표9> 왜구의 한반도 내륙 침공 사례

	연월	내 용
①	83/06	왜구가 경상도 길안 · 안강 · 기계 · 영주 · 신녕 · 장수 · 의흥 · 의성 · 선주 등을 노략질하고 또 단양과 제주(堤州)를 노략질하였다. 전의령 우하를 경상도에 파견하여 원수들이 왜구를 제대로 방어하는지 감찰하게 하였다.
②	83/07	가을 7월. 우하가 여러 병마사를 독려하여 왜구를 의성에서 공격하여 3명의 목을 베고, 또 예안 · 순흥에서 전투를 벌여 14명의 목을 베었다.
③	83/07	왜구가 대구(大丘) · 경산부(京山府) · 선주 · 인동 · 지례 · 김산(金山) 등 지역을 노략질하였다.
④	83/07	양광도원수 왕안덕이 괴주(槐州)에서 왜구를 공격하여 3명의 목을 베었다.
⑤	83/07	교주강릉도도체찰사 최공철이 방림역(芳林驛, 평창군)에서 왜구를 공격하여 8명의 목을 베었다.
⑥	83/08	왜구가 비옥(比屋) · 의성 등지를 노략질하였는데, 적은 많고 우리는 적어 누차 싸워도 불리하였다. 부원수 윤가관이 안동 · 예안 등의 지역에서 더불어 싸워 패배하였다.
⑦	83/08	왜구가 거령현(居寧縣) · 장수현(長水縣) 등을 함락시키고 군대를 나누어 전주를 노략질하려고 하였다. 부원수 황보림(皇甫琳)이 여현(礪峴)에서 싸워 이를 물리쳤다.
⑧	83/08	왜구 200여 기(騎)가 괴주(槐州) · 장연현(長延縣)을 노략질하였다. 원수 왕안덕 · 김사혁 · 도홍이 맞서 싸워 3명의 목을 베었다.
⑨	83/08	왜구 1,000여가 춘양(春陽) · 영월(寧越) · 정선(旌善) 등의 군현을 노략질하였다.
⑩	83/08	왜구가 임실현(任實縣)을 노략질하였다.
⑪	83/08	왜구 1,000여 명이 옥주현(沃州縣) · 보령현(報令縣) 등을 함락하고, 마침내 개태사(開泰寺)에 들어갔으며, 계룡산에 웅거하였다. 문달한 · 왕안덕 · 도홍이 나아가 공격하니, 적이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공주목사 최유경과 판관 송자호가 구점(仇岾)에서 더불어 싸웠다. 송자호는 패하여 죽고, 문달한과 김사혁 · 왕안덕 · 도홍 · 안경 · 박수년 등은 공주 반룡사(盤龍寺)에서 더불어 싸워 8명의 목을 베었으며, 김사혁은 목천(木川) 흑점(黑岾)까지 추적하여 20명의 목을 베었다.
⑫	83/09	왜구가 강릉부와 김화현(金化縣, 철원군)을 노략질하고 또 회양부와 평강현을 함락하였다. 경성(京城)에 계엄을 실시하고 평양과 서해도의 정예병을 징집하여 <경성에> 들어와 호위하게 하였으며, 전 정당상의 남좌시, 지밀직 안소, 밀직상의 왕승귀 · 왕승보 · 정희계 · 인해, 개성군(開城君) 왕복명, 판개성부사 객선 등을 파견하여 가서 공격하게 하였으나 김화에서 싸워 패배하였다.
⑬	83/09	왜구가 홍천현(洪川縣)을 함락하였다. 원수 김입견과 이을진이 더불어 싸워 5명의 목을 베었다.
⑭	83/10	겨울 10월. 도체찰사 최공철이 낭천(狼川, 강원도 화천군)에 이르자 왜구가 갑자기 튀어나와 습격하여 그 아들을 사로잡았다. 체복사 정승가가 양구(楊口)에서 왜구와 싸웠으나 패배하여 춘주(春州)로 퇴각하여 주둔하였다. 적이 춘주까지 추격하여 함락하고 드디어 가평현(加平縣)에 침입하였다. 원수 박충간이 맞서 싸워 물리치고 6명의 목을 베었다. 적이 청평산(淸平山)에 들어가 웅거하였다. 찬성사상의 우인렬을 도체찰사로 삼고 전 밀직 임대광을 조전원수로 삼아 가서 공격하게 하였다.
⑮	83/10	왜구가 안변부와 흡곡현을 노략질하고 사방으로 나가 노략하기를 무인지경을 밟는 것과 같았다.
⑯	83/11	왜구가 청풍군(충북 제천)을 노략질했다. 도순찰사 한방언이 금곡촌에서 싸워 8명의 목을 베었다.
⑰	84/07	왜구가 구례현(求禮縣)을 함락하고, 또 영동현(永同縣) · 주계현(朱溪縣) 등을 노략질하였다.
⑱	84/08	왜구가 영동현 · 청산현 · 안읍현 등과 은천소(銀川所)를 노략질하고 또한 전라도 안성소(安城所) · 천잠소(天蠶所) 두 곳과 응령역(應嶺驛) · 소천역(所川驛) 등을 노략질하였다.

위의 ①의 의성은 동해안에서 직선거리로 적어도 50km 이상, 선주(산)와 단양은 80km, 제천은 100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들 지역과 동해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 가장 험준하고 긴 태백산맥임을 고려할 때, 실제로 왜구들이 이들 지역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직선거리의 몇 배 이상에 달했을 것이다. ③의 선주, 인동, 김천 등은 약 60km, ④의 괴주(산)은 100km 이상, ⑤의 방림은 60km, ⑧의 장연현은 60km 이상, ⑯의 남해안에서 구례까지는 약 30km, 영동까지는 약 100km 이상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다.

심지어 위의 ⑫에서는 강릉부, 즉 동해안에 상륙한 왜구들이 김화현, 현재의 철원군까지 쳐들어갔던 것이 확인된다. 강릉에서 철원까지 직선거리는 약 100km 가까이 된다. 두 지역 사이에도 험준한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들 왜구는 모두 다 동해안에서 상륙한 왜구들이 수도 개경에 가까운 철원까지 쳐들어갔으니, “경성(京城)에 계엄을 실시하고 평양(平壤)과 서海道(西海道)의 정예병을 징집하여 <경성에> 들어와 호위하게 했다.” 고 한 것에서 고려 조정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

35) 이에 관해서는 이영「진포구(鎭浦口) · 남해 관음포(觀音浦) 해전과 고려 말 왜구 침구 양상의 변화」(『한국 중세사연구』 제64집, 2021년)을 참조.

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위의 ⑭를 보면 동해안에 상륙한 왜구들이 양구와 화천을 거쳐 춘천, 그리고 가평군의 청평산까지 쳐들어간 것이 확인된다. ⑮의 “사방으로 나가 노략하기를 무인지경을 밟는 것과 같이 하였다.” 고 한 표현대로 왜구들은 거칠 것 없이 한반도의 내륙 깊숙한 곳을 말을 타고 휩쓸고 다녔다.

이상의 <표9>의 왜구 내륙 침공 상황은 모두 다 기병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들은 ⑧의 200여기, ⑨와 ⑩의 1000여 명의 사례를 제외하면 그 정확한 병력 수를 알 수 없지만, ⑥의 “적은 많고 우리는 적어 누차 싸워도 불리하였다.”라는 서술을 볼 때, 결코 적은 병력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도 고려군이 왜구와 싸워 얻은 전과(戰果)를 보면, 3 · 5 · 6 · 8 · 14 · 20명 등 소수에 불과했다. 오히려 고려군이 패하는 경우도 있었다. (⑥ · ⑩1 · ⑫ · ⑭) 이처럼 왜구의 기병을 활용한 내륙 깊숙한 침공은 ‘조운의 육운화 조치’라기 보다는 우왕 6년(1380)과 9(1383)년의 최무선과 정지와의 해전에서 패배로 인해 서해안과 남해안에 상륙해 해안의 경작지를 약탈하지 못하고 동해안에 상륙해 내륙 깊숙이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었다.³⁶⁾

3. 이영의 견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김기섭과 나종우는 고려 말 왜구의 침공을 그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해 각각 두 시기로 구분했다. 그런데 묵은 이색(1328-1396)은 세 시기로 나누어서 파악했다. 고려 말 왜구가 발호(跋扈)하던 시기에 고려 조정의 고관으로 살았던 인물인 그가 왜구 침구 양상을 세 단계로 구분한 것에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이색의 이러한 구분에 착목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적이 있다.

<표10> 묵은 이색의 고려 말 왜구 침구의 세 단계³⁷⁾

	이색의 구별	시기(년)	특징
I	밤에 해안에 상륙, 몰래 도둑질	1350-71	밤에 침구, 낮에는 도주.
II	약탈 뒤 바로 철수하지 않고 대낮에 평원을 떠돌며 고려군과 전투를 벌임.	1372-75	고려군과 왜구의 매년 연속적인 육상 전투 발생
III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수준	1376-85	수도권 해역에 대규모 왜구의 연속적인 침구

그런데 최근 필자는 Ⅲ단계의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수준”의 근거로 제시한 바 “수도권 해역에 대규모 왜구의 연속적인 침구”가 오류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 <표11>을 보면 알 수 있다.

<표11> 공민왕 21(1372)년 - 우왕 원(1375)년 왜구의 수도권에 대한 침구.

	연	월	침구 장소	『고려사절요』
①	72	10	양천(陽川) · 강화도	권제43. 공민왕21년 10월
②		04	(東江, 임진강)에 가까운 섬.	권제44. 공민왕22년 4월
③		05	(城, 都城)에 가까운 섬.	권82. 지권제36. 병2(兵二). 진수.
④		06	동강과 서강 · 양천 · 한양부.	권제44. 공민왕22년6월
⑤		07	교동(道).	권제44. 공민왕22년 7월

36) 앞의 주(35) 이영 논문 참조.

37) 이영「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동북아문화연구』제31집, 2012년, 184쪽)을 참조.

⑥		07	서강(西江).	권82. 권제36. 병2(兵二) 진수.
⑦		09	해주(海州).	권제44. 공민왕 22년 9월.
⑧		03	안주(安州)	권제44. 공민왕 23년 3월.
⑨	74	04	자연도(紫燕島)	권제44. 공민왕 23년 4월.
⑩		09	도성 근처.	권제44. 공민왕 23년 9월.
⑪		09	안주(安州)	권제44. 공민왕 23년 9월.
⑫		03	경양현(慶陽縣)	권133. 열전. 권제46. 우왕 원년 3월.
⑬	75	09	덕적도(德積島) · 자연도(紫燕島).	권133. 열전. 권제46. 우왕 원년 9월.
⑭		12	양광도 연해 주현.	권133. 열전. 권제46. 우왕 원년 12월.

이 <표11>에서 보듯이 수도권 해역에 대한 왜구의 침공은 이미 공민왕 21(1372)년에도 있었다.³⁸⁾ 즉, “왜구의 선박이 동강과 서강에 모여 양천(陽川)을 노략질하고, 마침내 한양부(漢陽府)에 도달해 여사(廬舍)를 불태우고 백성을 약탈하고 죽여 수백 리가 소란스러우니, 경성(京城)이 매우 불안해했다.”(④)고 하는 사료다. 2년 뒤에는 도성 근처까지 쳐들어왔다. (⑩)

이러한 왜구들의 수도권 해역 일대에 대한 활발한 침구는 고려조정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해내게 했다. 다음 <표12>를 보자.

<표12> 공민왕 22(1373)년 - 우왕 원(1375)년에 걸친 수도권 침구 왜구에 대한 대응책

	연	월	조치 내용
①		10	최영을 육도도순찰사로 삼고 장수와 수령을 출척(黜陟)하고 군호를 편성하며 전함을 건조하고, 죄 있는 자는 모두 바로 처단함. ³⁹⁾
②		10	새로 건조된 전함을 보고 화전(火箭)과 화통(火箭)을 시험하였고, 밤에는 마장(馬場)에 유숙했다. ⁴⁰⁾
③	73	10	최영이 양광도도순무사 이성림이 능히 왜적을 막지 못했음을 이유로 장형에 처한 후 봉졸(烽卒)에 속하게 하고, 그 도진무 지심은 참형에 처함. ⁴¹⁾
④		11	명나라 중서성(中書省)에 자문하여 화약(火藥)을 내려줄 것을 청하다. ⁴²⁾
⑤	윤	11	도총도감(都摠都監)을 세워 성(城) 안의 모든 호(戶)를 모아 대 · 중호(大·中戶)는 5호를 하나로 삼고, 소호(小戶)는 10호를 하나로 삼았다. 각 1인을 뽑아 중부 · 동부는 동강으로 가고, 남부 · 서부는 서강으로 가서 왜구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⁴³⁾
⑥	74	01	검교중앙장 이희가 수군 재건을 건의하다. ⁴⁴⁾
⑦		01	5부도총도감에서 흥국사(興國寺)에 자리 잡고 각 영(領)과 방리(坊里)의 군기(軍器)를 점검하였다. ⁴⁵⁾
⑧		01	판전객시사 나흥유를 파견하여 일본을 예방하게 했다. ⁴⁶⁾
⑨		08	도성의 5부 호수(戶數)를 개정하였다. 무릇 가옥의 간가(間架)가 20 이상이면 1호(戶)를 삼아 군사 1정(丁)을 내게 하고, 간가가 작으면 혹 5가(家)를 합치거나 혹 3·4가를 합쳐서 1호로 삼았다. ⁴⁷⁾
⑩		09	경상도 · 양광도 · 전라도 각지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익위군(翊衛軍)이라 일컫고 동·서강에 주둔시켰다. 이에 이르러 서북면(西北面)의 정벌에 나아가자, 5부방리(五部坊里)의 각 호의 사람과 성 밖의 여러 능(陵)에 속해 있는 잡인(雜人)을 모아 양강(兩江)의 방어에 나가게 하였다. ⁴⁸⁾
⑪	75	09	여러 절의 주지승에게서 전마(戰馬) 각 1필씩을 징발함. ⁴⁹⁾
⑫		09	당시 장졸들이 모두 북방 원정길에 올랐으니, 이에 도성 방리(坊里)의 장정과 각 능호(陵戶)를 병사로 삼았다. 또한 양광도 · 전라도 · 경상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우리 태조 및 판삼사사 최영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여 동강 · 서강에서 군세를 과시함으로써 대비하게 한 다음, 얼마 후 각 도에 병사들을 돌려보냈다. ⁵⁰⁾
⑬		09	각 절의 주지승들에게 전마(戰馬) 1필씩을 징발하고, 또 각 사원의 전조(田租)를 거두어 군수로 충당했다. ⁵¹⁾
⑭		11	재신 · 추밀로 하여금 모두 무기를 가지고 숙위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재신 · 추밀 각 1인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입직(入直)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번차(番次)에 관계없이 모두 숙위하게 했다. ⁵²⁾

38) 왜구들의 수도권 해역에 대한 침구는 초기부터 있었다. 예를 들면, “가을 8월 병술 왜선(倭船) 130척이 자연도(紫燕島)와 삼목도(三木島)를 노략질하여 민가를 거의 다 불살랐다.”고 하는 『고려사』 권37. 세가 권제 37. 충정왕(忠定王) 3(1351)년 8월조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

39) 『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10월.

40) 『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10월.

41) 『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10월.

42) 『고려사』 권제44. 공민왕 22년 11월.

고려 조정은 왜구의 수도권 해역에 대한 침구의 대응으로 함선의 건조를 통한 수군의 재건(① ② ⑥), 개경 내의 주민들을 조직해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도록 했으며(⑤), 도성 내 5부 호수(戶數)를 개정해 병력의 증원을 꾀하였고(⑨), 지방의 군사를 도성으로 올려서 익위군이라 칭하고 동서강에 주둔하게 했으며(⑩), 도성 방리의 장정과 각 능호를 병사로 삼았다(⑫). 그 외에도 사찰에서 전마를 징수하고(⑪ ⑬), 명나라에 화약 지원 요청을 하고(④), 일본에 금왜요구사절(禁倭要求使節)을 파견하는 등(⑧) 훗날 왜구 금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군사 및 외교 정책이 바로 이 시기, 즉 공민왕 21(1372)년에서 우왕 원(1375)년에 걸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도권 해역에 대규모 왜구의 연속적인 침구”는 이미 제Ⅱ단계에 현저하게 전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제Ⅲ단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Ⅱ단계와 구별되지 않는다. Ⅲ단계의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수준”은 “수도권 해역에 대한 위협”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침구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Ⅲ. 이색의 왜구 침공의 제Ⅲ단계

1. 27개월 동안 지속된 침공

그러면 이색은 왜구 침공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수준”으로 생각한 것일까? 이 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왜구 침공의 제Ⅲ단계의 특징에 대한 이색의 인식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다음의 우왕 3(1377)년 3월의 『고려사절요』의 기사다.

4. 경상도원수 우인열이 보고하기를, “①왜적이 대마도로부터 바다를 덮고 오는데, 돛과 돛대가 서로 바라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군사를 보내어 요충지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으나, 적의 형세가 바야흐로 성하고 방어해야 할 곳은 많으니, 한 도의 병사로 군대를 나누어 지키는 것은 형세 상 매우 고립되고 약합니다. 청하건대 조전원수(助戰元帥)를 보내어 요해처를 방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②이때 강화(江華)의 적이 경도(京都)에 매우 가까이 닥쳐와서 나라에서는 방어를 하느라 겨를이 없었는데, 또다시 이러한 보고가 올라왔으므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⁵³⁾

43) 『고려사』 권82. 지 권제36. 병2(兵二). 진수.

44) 『고려사』 권제37. 병3. 선군.

45) 『고려사』 권81. 지 권제35. 병1(兵一) 병제.

46) 『고려사』 권133. 권제46. 우왕 원년 2월.

47) 『고려사』 권81. 지 권제35. 병1(兵一). 병제.

48) 『고려사』 권82. 지 권제36. 병2(兵二). 진수.

49) 『고려사』 권82. 지 권제36. 병2(兵二) 마정.

50) 『고려사』 권133. 열전 권제46. 우왕 원년 9월.

51) 『고려사』 권133. 열전 권제46. 우왕 원년 9월.

52) 『고려사』 권82. 지 권제36. 병2(兵二) 숙위.

53)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3년 3월.

이미 수도권 해역의 강화도를 점령한 왜구들이 수도권 개경 가까이 접근해있는 상황(㉔)에 설상가상격으로 또 다시 대마도 앞바다를 뒤덮을 정도로 많은 왜구의 대규모 선단이 경상도 해안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㉕)는 것이다. 즉, 제Ⅲ단계의 침구의 특징은 제Ⅱ단계의 그것과 달리, 다수의 왜구 무리들이 여러 차례 연속적인 파동(波動)을 이루며 해일(海湓)처럼 몰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제Ⅱ단계와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왕 3년 3월을 기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왜구의 침구 양상을 정리한 것이 <표13>이다.

<표13> 우왕 3(1377)년 3월 이전부터 우왕 2(1376)년 1월까지 소급(溯及)해서 본 왜구의 침구 양상.

	연/월	내 용
①	77/03	판개성부사 나세가 상연하기를, “청하건대 군사를 거느리고 강화에 들어가서 왜구를 공격하겠습니 다.”라고 하였다. (중략) 적은 이에 강화를 버리고 물러나서 수안현 · 통진현 · 동성현 등지를 노 략질하였으니, 지나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⁵⁴⁾
②	77/03	왜구가 밤에 착랑에 들어와서 전함 50여 척을 불태웠다. 바다가 낮처럼 밝았으며, 죽은 자가 100 여 인이었다. (중략) 왜구가 또다시 강화부를 노략질하였다. ⁵⁵⁾
③	77/02	경양을 노략질하고 평택현에 들어가니, 양광도부원수 인해가 더불어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⁵⁶⁾
④	77/02	왜구가 신평현(新平縣, 당진군 신평면)을 노략질하였다. ⁵⁷⁾
⑤	77/01	왜구가 회원창(현 창원시 합포구)의 품미(品米)를 도적질하였다. ⁵⁸⁾
⑥	76/12	왜구가 합포의 군영을 불태우고, 양주와 울주 두 지역 및 의창현 · 회원현 · 함안현 · 진해현 · 고 성현 · 반성현 · 동평현 · 동래현 · 기장현 등지를 도륙하고 불태웠다. ⁵⁹⁾
⑦	76/11	왜구가 진주 반성현을 노략질하고, 또다시 울주 회원현 · 의창현 등지에 침입하여 거의 모두를 죽 이고 노략질하였으며, 또한 밀성군 및 동래현을 노략질하였다. ⁶⁰⁾
⑧	76/11	왜구가 진주 명진현을 노략질한 뒤 또 함안 · 동래 · 양주 · 언양 · 기장 · 고성 · 영선 등지를 불 태우고 노략질하였다. ⁶¹⁾
⑨	76/10	왜구가 진포를 노략질하고는 또다시 강화부를 노략질하여 전함을 불태웠다. 그리고 한주를 노략질 하니, 최공철이 그들을 공격하여 1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술과 안마(鞍馬)를 하사하였다. ⁶²⁾
⑩	76/10	왜구가 부령을 노략질하자, 변안열 · 나세 · 조사민이 나아가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격파했다. ⁶³⁾
	76/윤9	이달은 왜구가 침구하지 않았음.
⑪	76/09	이때 왜구가 임파현을 함락시키고 다리를 철거하여 스스로 굳게 지키니, 유실이 몰래 사졸들로 하 여금 다리를 만들게 하고 변안열은 군사를 거느리고 건너서 안렴 이사영으로 하여금 다리 부근에 복병을 두도록 하였는데, 적이 바라보고서 맞서 공격하자 우리 군대가 패하였다. ⁶⁴⁾
⑫	76/09	왜구가 전주를 함락시키니, 목사 유실이 더불어 싸웠으나 패하였다. 적이 물러나 귀신사에 주둔하 자 유실이 다시 공격하여 그들을 물리쳤다. ⁶⁵⁾
⑬	76/09	왜구가 고부 · 태산 · 흥덕 등의 군현을 노략질하고 관청을 불태웠다. 또한 보안현 · 인의현 · 김제 현 · 장성현 등지를 노략질하였다. ⁶⁶⁾
⑭	76/07	최영이 (중략) 홍산에 이르렀다. 왜구가 먼저 험하고 좁은 곳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3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직 1개의 길로만 통할 수 있었다. 장수들이 두려움에 겁을 먹어 나아가지 않았다. ⁶⁷⁾
⑮	76/07	왜구가 낭산현 · 풍제현 등지를 노략질하였다. 전라도 원수 유영과 전주 목사 유실이 힘써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약탈한 소와 말 200여 마리를 획득하여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⁶⁸⁾
⑯	76/07	왜구가 부여를 노략질하고 공주에 이르렀다. 목사 김사혁이 정현에서 싸우다가 패전하여 마침내 공 주가 함락되자, (중략) 적이 마침내 개태사를 도륙하였다. ⁶⁹⁾
⑰	76/07	가을 7월. 왜구가 전라도원수의 군영을 노략질하였다. 또한 영산을 노략질하고 전함을 불태웠으며, 나아가 나주를 노략질하고 불을 지르면서 약탈하였다. ⁷⁰⁾
⑱	76/06	왜구가 임주를 노략질하였다. 전주도병마사 유실과 지익주사 김밀 등이 힘써 싸워서 물리쳤다. ⁷¹⁾
⑲	76/03	왜구가 진주를 노략질하였다. 조민수가 청수역에서 더불어 싸워 13명의 목을 베어서 바쳤다. ⁷²⁾
㉔	76/01	봄 정월. 전라도도안무사 하을지가 왜선 1척을 잡으니, 옷과 술을 하사하였다. ⁷³⁾

54)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3년 3월조.

55)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3년 3월조.

56)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3년 2월조.

57)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3년 2월조.

58)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3년 1월조.

59)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12월조.

60)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11월조.

우왕 3년 3월의 침구는 우왕 2(1376)년 10월부터 시작해 약 6개월 동안 왜구가 한 달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침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⁷⁴⁾ 그리고 우왕 3년 3월 이후 우왕 4(1378)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에 걸쳐 매달 연속적으로 이어졌다.⁷⁵⁾ 그 결과, 왜구들은 우왕 2(1376)년 10월부터 우왕 4(1378)년 12월까지 약 2년 3개월, 27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고려를 침구해왔다.⁷⁶⁾

이는 김기섭이 왜구의 최극성기로 주목했던 공민왕 21(1372)년, 그리고 나종우가 왜구 창궐기의 제Ⅱ기와 중기의 시점(始點)으로 분류했던 공민왕 23(1374)년 이후부터 우왕 2년 10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다. 공민왕 21년(7개월) · 22년(6개월) · 23년(6개월) · 우왕 원년(5개월)에 비해, 우왕 2년 10월 이후로는 1년 12달 한 달도 쉬지 않고 27개월 동안이나 쳐들어왔던 것이었다. 그리고 우왕 5(1379)년 1월에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이후 10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침구해왔다. 이해 12월과 다음 해인 우왕 6(1380)년 1월 두 달 침구하지 않던 왜구는 4월 한 달을 제외하고 10월까지 연속적으로 침범해오다 이하, 왜구의 침구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4> 공민왕 21(1372)년 - 우왕 12(1386)년까지 침구한 달(○)과 않은 달(●)

1372	●	○		○	○	●	○	○	●	○		○		●	●
1373	●	○		○	○	●	○	○	●	○		●		●	●
1374	●	●		○	○	○	●	●	○	○		●		●	○
1375	●	●		○	●	●	●	●	○	○		●		○	○
연도	1	2	윤2	3	4	5	6	7	8	9	윤9	10	윤10	11	12
1376	○	●		○	●	●	○	○	○	○	●	○		○	○
1377	○	○		○	○	○	○	○	○	○		○		○	○
1378	○	○		○	○	○	○	○	○	○		○		○	○
1379	●	○		○	○	○	○	○	○	○		○		○	●
1380	●	○		○	●	○	○	○	○	○		○		●	●

61)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11월조.
62)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10월조.
63)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10월조.
64)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9월조.
65)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9월조.
66)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9월조.
67)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7월조.
68)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7월조.
69)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7월조.
70)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7월조.
71)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6월조.
72)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3월조.
73)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2년 1월조.
74) 그런데 9월과 10월 사이에는 윤9월이 있었지만, 9월과 10월에 침공한 왜구는 동일 집단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해서는 앞의 주(9) 논문 참조.
75) “12월 왜구가 하동 · 진주를 노략질하니, 도순문사 배극렴이 병마사 유익환과 함께 협공해 19급 베었고, 사주(泗州)까지 추격하여 2급을 베었다.”(『고려사』 권133. 열전 권제46. 우왕 4년 12월조)를 마지막으로 왜구가 다시 재침하기 시작한 것은 “정지가 순천 등지를 노략질하던 왜구와 싸워 패하다”(『고려사절요』 권31. 신우2. 우왕 5년 2월조)였다.
76) <표14> 참조.

1381	●	○		○	○	○	○	○	○	○		○		○	●
1382	●	○	○	○	○	○	○	○	○	●		○		●	●
1383	○	●		●	●	○	○	○	○	○		○		○	●
1384	●	●		●	●	●	●	○	○	●		○	○	○	○
1385	○	○		○	○	○	○	○	○	○		○		○	●
1386	●	●		●	●	●	●	●	●	●		●		●	●

이 <표14>에서 보듯이, 우왕 2(1376)년 10월부터 우왕 4(1378)년 12월까지 27개월 동안은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왜구들이 연속적으로 침구해왔다. 또 이를 우왕 5(1379)년 11월까지 연장해보면 총 38개월 동안 우왕 5년 1월의 한 달만 제외하고 총 37개월 동안 쉼없이 연속적으로 침구해온 셈이다. 이를 제Ⅲ단계의 시작점인 우왕 2(1376)년부터 우왕 5(1379)년 12월까지 계산하면 총 48개월 동안 왜구가 침구한 달이 총 6달로 전체의 12.5%에 불과하다.

또 우왕 6(1380)년부터 우왕 9(1383)년까지 왜구가 침구한 달은 총 48개월 중 14개월로 전체의 약 29%에 달한다. 이는 제Ⅱ단계, 즉 공민왕 23(1372)년부터 우왕 원(1375)년까지의 양상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다. 즉, 총 48개월 동안 왜구가 침구한 달은 24개월로 전체의 50%에 달한다.

2. 침구 지역의 급증 및 공격적인 군사 행동

그런데 이러한 단계별 왜구의 침구 양상은 다른 점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의 <표15>를 보자.

<표15> 경인(년) 이후의 왜구 침구표⁷⁷⁾

연도	지역	연도	지역	연도	지역	연도	지역	연도	지역	연도	지역	연도	지역	연도	지역	연도	지역
50년	8	55년	2	60년	19	65년	6	70년	2	75년	13	80	40	85년	17	90년	7
51년	5	56년	0	61년	11	66년	3	71년	4	76년	50	81	33	86년	0	91년	1
52년	13	57년	3	62년	2	67년	1	72년	18	77년	58	82	25	87년	7	92년	0
53년	1	58년	12	63년	2	68년	0	73년	10	78년	51	83	55	88년	23		
54년	1	59년	4	64년	12	69년	5	74년	15	79년	41	84	19	89년	9		

즉, 제Ⅱ단계(1372-1375)의 경우는 왜구가 한 차례 침구했을 때, 많은 경우 3-4 곳, 보통 1-2 곳을 쳐들어갔다. 그 결과, 공민왕 21(1372)년에는 18곳 · 22(1373)년에는 10곳 · 23(1374)년에는 15곳 · 우왕 원(1375)년에는 13곳으로 총 56곳에 달했다. 그런데 이것이 Ⅲ단계가 되면 급변한다. 즉, 우왕 2(1376)년에는 무려 50곳으로 침구 지역이 급증한다. 그리고 우왕 3(1377)년에는 58곳, 우왕 4(1378)년에는 51곳, 우왕 5(1379)년에는 41곳으로 이 최초의 4년 동안에 침구한 지역수가 총 200곳이나 된다. 즉 제Ⅱ단계의 56곳이 Ⅲ단계의 200곳으로 약 4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뒤이은 4년 동안(1380-1383)에는 침구 지역수가 40+33+25+55로 총 153곳이나 된다. 이 역시 Ⅲ단계의 최초의 4년 동안보다는 47곳이 적지만, 제Ⅱ단계의 56곳의 약 3배 가까운 숫자에 달한다. 이는 이색이 A와 B의 제Ⅲ단계를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도 이상하지 않다.

77) 이영「고려 말 왜구와 마산」(『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에피스테메, 2007년)에서 <표>를 전재함.

이처럼 우왕 2년부터 왜구의 침구 지역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배경에는 왜구의 기병 동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즉, 우왕 2(1376)년 10월에 최초로 왜구가 기병을 동원한 사실이 문헌 사료상에서 확인되는데,⁷⁸⁾ 이와 같은 우왕 2년의 왜구 침구는 경인년(1350) 이후 공민왕 21(1372)년이나 공민왕 23(1374)년과 또 다른 차원의, 침공이 시작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13>에서 보듯이, 우왕 2년의 침구는 9월 이전, 이미 7월부터 심상치 않은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즉, “전라도 원수의 군영을 노략질하였다. 또한 영산을 노략질하고 전함을 불태웠으며”(㉞) “합포의 군영을 불태우고(㉞)” “전함을 불태우고(㉡ ㉢)” “관청을 불태웠다.(㉢)” 등, 단순한 해적의 약탈 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공격적인 군사 작전’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양곡을 약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말과 군량으로도 활용 가능한 소를 200여 마리나 약탈했다고 하는 것(㉤) 역시 그것들이 병량 및 전쟁 수행 물자라는 점에서 왜구들의 군사적 지향성이 엿보인다.

또한 “왜구가 먼저 험하고 좁은 곳에 웅거하고 최영의 고려군을 유인”(㉨)하고 “왜구가 임파현을 함락시키고 다리를 철거하여 스스로 굳게 지키니,”(㉩)와 같은 소위 ‘교량 철거 전술’은 헤이안 시대 말기 이후 남북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무사들이 사용하던 전술이었다.⁷⁹⁾ 이는 남북조 내란기 당시, 일본 무사들이 전형적으로 활용하던 산악전(山岳戰)·계림라전의 양상을 그대로 한반도에서 재현한 것이었다. 또 당시 사관(史官)이 “공주를 함락하고”(㉪)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수준”이라고 한 것은 결코 이색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이처럼 왜구에 의해 나라가 점령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의식은 고려 조정으로 하여금 우왕 3(1377)년 5월, 마침내 천도(遷都)까지 논의하기에 이른다.

5. ㉨경성이 바닷가에 인접하여 왜구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지(內地)로 도읍을 옮기 고자 기로(耆老) 윤환 등을 모아 동(動)과 지(止) 두 글자를 써놓고 가부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비록 기꺼워하지 않았으나 이후 만약에 변이 생기면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모두 동(動)자에 점을 찍고 서명하였다. ㉩오직 최영만이 불가하다고 하며 이내 군사를 징발하여 굳게 지킬 대책을 진술하였다. 이인임이 말하기를, ㉪“지금 피폐한 땅이 1,000리에 이어져 농부들이 경작을 멈추고 구름과 무지개만 바라보고 있는데, 또 군사를 징발하여 농사일을 잃게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계책이 아니요.”라고 하였다. 경복흥과 최영 등이 태조의 진전(眞殿)에 이르러 동(動)과 지(止)를 점쳐서 지(止)자를 얻었다. ㉫우왕이 말하기를, “도적이 매우 가까이에 있는데, 점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한 뒤 정당문학(政堂文學) 권중화를 보내어 철원(鐵原)에 터를 살펴보도록 하였다.⁸⁰⁾

78) 앞의 주(9) 논문 참조.

79) 앞의 주(9) 논문 참조.

80)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3년 5월.

앞의 <표11>에서 보듯이, 이미 왜구들은 4-5년 전부터 수도권 해역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왜구로 인해 내륙으로 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고려 조정이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우왕 3년 5월에 이르러서였다(㉔). 최영은 천도에 반대하고 병사를 징발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하지만(㉕), 당시 우왕 조정의 실권자인 이인임이 최영의 주장에 반대한다.(㉖) 그러자 태조 왕건의 진전(眞殿)에서 점을 봐서 ‘지(止)’ 즉 ‘천도 불가’의 결과가 나왔지만, 점괘를 무시하고 우왕은 재차 왜구에 대한 위협을 내세워 천도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한다. (㉗) 당시 고려 조정이 느낀 왜구의 위협은 예전과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이는 공민왕 10(1361)년 11월 19일에 왕이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난 것에 준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수준”이라고 한 고려의 위기의식은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 다시 말해 이색이 지적한 바 왜구 침구의 제Ⅲ단계는 언제까지로 볼 수 있을까? 필자는 우왕 9(1383)년까지로 생각한다. 다음의 <표16>을 보자.

<표16> <표14>의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

	기간	○	%	●	%
제Ⅱ단계	1372-75	24	50	24	50
제Ⅲ단계	A(1376-79)	42	87.5	6	12.5
	B(1380-83)	34	70.8	14	29.2
		100	69.4	44	30.6

이 <표16>에서 보듯이 A 단계의 4년 동안에는 왜구가 침구한 달(○)이 42개월로 전체의 87.5%에 달하는데, 침구하지 않은 달(●)은 6개월로 전체의 12.5%에 불과하다. 이는 제Ⅱ단계의 4년 동안의 ○가 24개월로 전체의 50%-87.5%, ●역시 24개월로 50%-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B 단계의 4년 동안은 A 단계와 비교하면 ○는 87.5%-70.8%, ●는 12.5%-29.2%로 왜구의 침구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Ⅱ단계와 비교하면 ○가 50%-70.8%, ●는 50%-29.2%로 여전히 B 단계가 Ⅱ단계보다 훨씬 더 왜구의 침구가 격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B 단계가 A단계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은 확인되지만 후술하는 것처럼 다른 점에서 여전히 위협의 심각성은 이어졌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왜구 침구의 최절정기는 A 단계, 즉 우왕 2년부터 5년이며 B 단계인 우왕 6년부터 9년까지의 침구도 제Ⅱ단계보다는 더 격렬했음을 알 수 있다.

3. 기병을 활용한 내륙 깊숙한 침공

제Ⅲ 단계의 왜구 행동의 특징 중 하나로 ‘기병을 활용한 내륙 깊숙한 침공’을 들 수 있다. 왜구들이 최초로 가장 내륙 깊숙이 왜구들이 침투해 온 사례로 우왕 4(1378)년 10월에 옥주(충북 옥천)까지 쳐들어온 것을 들 수 있다.⁸¹⁾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우왕 6년 7월에 당시 왜구의 총지휘관이었던 어린 아지발도가 이끌었던 본진이 옥주까지 들어왔던 것은 이때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앞의 <표16>에서 보면 침구의 빈도는 A 단계보다 B

81) “10월 왜구가 옥주(沃州) · 진동(珍洞) · 회덕(懷德) · 청산(靑山) · 임주(林州)를 노략질하니 양광도원수 한방언이 공격하여 2급(級)을 베고, 말 10필을 노획하였다.” 『고려사』 권133. 열전 권제46. 우왕 4년 10월 조.

단계가 많이 감소했지만, 고려의 조야(朝野)가 체감하는 위협 강도는 결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왜구가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공해옴으로써 위협 강도는 더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우왕 4(1378)년 12월까지 매달 이어진 왜구의 침구는 다음 해에는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즉, 우왕 5(1379)년에는 왜구가 침구한 지역이 모두 31 곳이다. 다음의 <표17>을 보자.

<표17> 우왕 5(1379)년의 왜구 침구 양상

	월	침구 지역
①	2	순천(順天) · 조양(兆陽, 보성군)
②	3	도강현(道康縣, 강진군)
③		곡성(谷城) · 남원(南原) · 순천부(順天府)
④		안산군(安山郡)
⑤	4	연안부(延安府, 황해도 연안군)
⑥		합포(合浦)
⑦		용강현(龍岡縣, 남포시) · 목곶포(木串浦)
⑧		풍천(豐川, 황해도 송화군)
⑨	5	신주(信州, 황해도 신천읍)
⑩		진주(晉州)
⑪		풍주(豐州, 황해도 과일군)
⑫	윤5	영청현(永淸縣, 평남 평원군)
⑬		울주(蔚州) · 계림부(雞林府)
⑭		청도군(淸道郡)
⑮	6	용주(龍州, 평북 용천군) · 의주(義州)
⑯		울주 · 청도 · 밀성 · 자인(慈仁) · 연양
⑰		낙안군(樂安郡)
⑱	7	무릉도(武陵島, 울릉도)
⑲	8	여미현(餘美縣, 서산시 해미면)
⑳		수주(隨州, 평북 정주) · 광주(郭州, 평북 광산)
㉑	9	반성현 · 단계현(산청군) · 거창현 · 야로현(합천군) · 가수현(합천군)
㉒		산음(山陰) · 진주 · 사주(泗州) · 함양

이 해에는 1, 10, 11, 12의 4개월 동안을 제외하고 2, 3, 4, 5, 윤5, 6, 7, 8, 9월의 총 9개월에 걸쳐서 총 41곳에 침구했다. 이는 전년도인 우왕 4(1378)년도 보다 10곳 감소한 숫자다. 침구 지역 역시 대부분 해안 지방이다. 이 해에 왜구의 기병 관련 사료는 단 1 사례만이 확인된다. 우왕 3(1377)년에 4건, 우왕 4(1378)년에 3건의 기병 관련 사료가 확인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면 다음 해인 우왕 6(1380)년의 상황은 어떠할까? 다음 <표>를 보자.

< 표18 > 우왕 6(1380)년의 왜구 침구 양상

	월	지역
①	2	영선현(永善縣, 진주)
②	2	보성군(寶城郡) · 부유현(富有縣, 순천 주암면)
③	3	순천(順天) 송광사(松廣寺, 송광면 신천리)
④	3	광주(光州) · 능성현(綾城縣, 나주시) · 화순현(和順縣, 화순군)
⑤	5	결성(結城, 홍성군 결성면) · 홍주(洪州, 홍성군)
⑥	6	정읍현(井邑縣, 정읍시)
⑦	7	명량향(鳴良鄉, 전북 김제시 죽산면)
⑧	7	서주(西州, 충남 서천군) · 부여현 · 정산현(정산면) · 운제현(완주군 운주면) · 고산현(완주군 고산면) · 유성현(대전 유성구) · 계룡산 · 청양(청양군) · 신평(공주시 신평면) · 홍산(부여 홍산읍)
⑨	7	옥주(옥천군) · 금주(금산군) · 함열현(익산시 함열읍) · 풍제현(익산시 용안면)
⑩	8	공주(公州)
⑪	8	진포(鎭浦, 서천군 장항읍) · 옥주(沃州) · 이산현(옥천군 이원면) · 영동현(영동군)
⑫	8	임주(林州, 부여군 임천면)
⑬	8	황간현(영동군 황간면) · 어모현(김천시 어모면) · 중모현(상주시 모동면과 모서면) · 화령현(상주시 화서면) · 공성현(상주시 공성면) · 청리현(상주시 성리면) · 상주(尙州) · 선주(善州, 구미시 선산읍)
⑭	8	신곡부곡(薪谷部曲, 김천시 조마면)

⑮	8	사근내역(沙斤乃驛, 함양군)
⑯	9	운봉현(雲峯縣, 남원시) · 지리산(智異山)
⑰	10	김해부(金海府, 김해시)

이 해의 왜구는 1, 4, 11, 12월의 4개월간을 제외한 8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44곳을 침구했다. 특히 8-16에 걸친, 즉 그해(경신년, 1380) 7월부터 9월까지 내륙을 전진한 왜구는 하나의 무리가 이동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있는 왜구의 기병 기사는 총 2건 확인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포구에서 자신들이 타고 온 배가 전소되어 돌아갈 방법을 잃어버린 왜구들이 <충남 - 충북 - 경북 - 경남 - 전북>을 전진하면서 고려의 토벌대와 전투를 벌일 뿐만 아니라 약탈, 방화, 살인, 강간 등의 온갖 만행을 자행한 사실이다. 심지어 금성(광주)에서 말을 먹인 뒤 개경을 향해 쳐들어가겠노라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옥주에서 본진을 이끌고 있던 아지발도는 자기 배가 불타버린 것을 안 뒤, 해안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내륙 방향인 영동군의 황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추풍령을 넘어 김천, 상주로 내륙 깊숙이 침구해갔다.⁸²⁾ 이러한 왜구의 내륙 침공은 고려 조정으로 하여금 더 큰 위기의식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 왜구들은 오히려 정지 등이 이끄는 고려의 토벌대를 역습해 원수 2명을 포함한 고려 장병 500명을 살해하는 승전까지 거두었다.⁸³⁾ 이에 고려 조정은 이성계의 정예 병력을 추가 파견해야 했다. 왜구 침입 중에서도 고려의 조야(朝野)에 가장 큰 충격을 안겨 준⁸⁴⁾ 이 사건이 이 해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수준”이라고 한 왜구의 위협은 여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해인 우왕 7(1381)년의 왜구 침구 양상은 어떠했을까? 다음 표를 보자.

< 표19 > 우왕 7(1381)년의 왜구 침구 양상

	월	침구 지역
①	2	영해부(寧海府, 경북 영덕군 영해면)
②	3	강릉도(江陵道, 강원도)
③	3	송생(松生, 청송군) · 울진 · 삼척 · 평해(울진군) · 영해(영덕군) · 영덕 · 삼척현
④	4	무등산(無等山) 규봉사(圭峯寺)
⑤	5	이산수(伊山戍, 충남 예산군)
⑥	5	경상북도(불명)
⑦	5	영해부(寧海府)
⑧	6	비인현(庇仁縣, 서천군 비인면)
⑨	6	영주(永州, 영천시)
⑩	6	김해부(金海府) · 영해(寧海) · 울주(蔚州) · 양주(梁州) · 언양(彦陽)
⑪	6	울진현(蔚珍縣)
⑫	7	고성현(固城縣, 강원도 고성군)
⑬	7	김해부(金海府)
⑭	7	축산도(丑山島, 영덕군 축산면)
⑮	9	영주(永州, 영천시)
⑯	9	서주(瑞州, 서산시)

82) 이에 관해서는 이영「경신년 왜구의 이동과 전투」(『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에피스테메, 2007년)을 참조.

83) 이에 관해서는 앞의 주(82) 논문을 참조.

84) 이에 관해서는 이영「손자병법을 통해 살펴본 왜구사 최대의 격전(황산전투)」(『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에피스테메, 2007년)을 참조.

⑰	10	반남현(潘南縣, 나주시 반남면)
⑱	10	임하현(臨河縣, 안동시 임하면)
⑲	11	보령현(保寧縣, 보령시)
㉔	11	밀성군(密城郡)

이해는 1, 8, 12월의 3개월간을 제외한 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총 31곳을 침구했다. 전 년도에 500척으로 침구했던 경신년 왜구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전멸당했기 때문인지, 이해에는 내륙 깊숙이 침구하지 않고 대부분 해안 지방을 침구하고 있다. 3월에 7곳을 침공한 사례가 보이지만 이 역시 거의 다 동해안 지역을 침구한 것이며 다른 사례는 대부분 해안 지방 1곳에 불과하다. 물론 4월의 무등산 규봉암의 경우는 내륙지방이지만 이들은 지난해 지리산으로 도주해 살아남은 왜구들이 이동한 것으로,⁸⁵⁾ 이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왜구들이 해안 지방을 침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우왕 8(1382)년의 침구 양상을 보자.

< 표20 > 우왕 8(1382)년의 왜구 침구 양상

	월	침구 지역
①	2	임주(林州(충남 부여군 임천면)
②	윤2	임주(林州) · 부여(扶餘) · 석성(石城(충남 부여군 석성면)
③		평해군(平海郡, 울진군 평해읍)
④	3	삼척현(三陟縣) · 울진현(蔚珍縣) · 우계현(羽溪縣, 강릉시 옥계면)
⑤		영월 · 예안(禮安, 안동시 예안면) · 영주 · 순흥(順興, 영주시 순흥면) · 보주(甫州, 예천군) · 안동
⑥	4	강릉부(속초)
⑦		죽령(竹嶺, 영주시 풍기읍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이의 고개) · 단양군(丹陽郡)
⑧	5	회양부(淮陽府, 강원도 양구군)
⑨		영춘현(永春縣, 충북 단양군 영춘면)
⑩	6	안동(安東)
⑪		경산(慶山) · 대구(大丘, 대구시) · 화원(花園, 달성군 화원읍) · 계림(雞林, 경주시)
⑫	10	영산(靈山, 창녕군 영산면) · 멸포(蔑浦,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와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를 연결하는 낙동하구 나루터)
⑬		통구현(通溝縣, 강원도 창도군과 김화군 일대)
⑭	10	남원군(南原郡)
⑮		진포(鎭浦) · 군산도(群山島)

이해에는 1, 7, 8, 9, 11, 12월의 6개월을 제외하고 2, 3, 4, 5, 6, 10월의 6개월 동안 총 15회에 걸쳐서 30곳을 침구했다. 2월에서 윤2월에 걸쳐서 다시 금강을 거슬러 올라와 부여까지 들어왔지만 더이상 내륙 깊숙이 침구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해 3월부터 영월과 안동, 영주 등과 같은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왜구들은 4월에는 죽령을 넘어 단양까지 들어왔다. 이들은 전달인 2월에 평해읍에 침구한 왜구들이 이동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태백산맥을 넘어 내륙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왜구의 기병 관련 사료는 우왕 2(1376)년 1건, 동 3(1377)년 4건, 동 4(1378)년 3건, 동 5(1379)년 1건, 동 6(1380)년 2건, 동 7(1381)년 2건, 동 8(1382)년 3건, 동 9(1383)년 5건, 동 11(1385)년 1건, 동 14(1388)년 1건으로 총 23건인데⁸⁶⁾ 이 중 우왕 8(1382)년에는 3건으로 83년(5건), 77년(4건) 다음으로 78년과 같이 3건이나 확인되는 것은 이 해에 왜구들의 내륙 침공이 다시 심화된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조정으로서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우왕 9(1393)년의 침구 양상은 앞의 <표9>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9월에 동해안에 상륙해

85) 이에 관해서는 앞의 주(82) 논문 참조.

86) 앞의 주(35) 논문의 <표>의 내용을 일부 정정한 결과임.

수도 개경의 인근 지역이며 천도 대상지이기도 했던 철원까지 기병으로 침구한 사례 (<표9>의 ⑫), 그리고 10월에도 동해안으로 상륙한 왜구가 춘주(춘천)을 거쳐서 가평의 청평산까지 침구한 사례(<표9>의 ⑭)를 들 수 있다. 왜구에 대한 고려 조정의 우려 즉,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수준”라고 한 위협의 심각성은 이때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왜구의 위협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줄어든다. 우왕 9(1383)년의 침구 지역수 55곳에 비해 다음 해인 우왕 10(1384)년에는 19곳으로 현격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우왕 14(1388)년의 일시적인 증가를 제외하고 점점 더 감소해간다.

IV. 결론

일본 학계는 고려 말 왜구의 침공이 고려 왕조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밝히는 것은 근대 이후 왜구 연구를 주도해온 일본에 의해 형성된 왜구 인식의 틀에 메스를 가하는 작업일 뿐 아니라, 아울러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14 세기 후반-15세기 전반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진행한 본 고에서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즉, 선행연구 중 김기섭은 고려 말 왜구의 침구 양상을 ‘최극성기’와 ‘그 전 단계’의 두 단계로 분류하였고 최극성기의 시작을 공민왕 21(1372)년부터라고 했다. 그리고 이 분류의 기준으로 ‘왜구의 내륙 침공’을 들었다. 그러나 고려 말 왜구의 침구 양상의 변화는 목은 이색의 세 단계 분류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며, 제Ⅲ단계가 김기섭의 ‘최극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왜구의 내륙 침공 역시 그 본격적인 전개는 공민왕 21년이 아닌, 우왕 6(1380)년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나종우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구들은 우왕 원년 윤9월 이전에 전라도를 위시한 양광도와 경상도에 빈번하게 침구했다. 그 결과, 연해주군에서의 미곡 생산이 격감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 조정은 우왕 원년 윤9월에, 위의 세 지방에 면세조치를 취하고 조운을 육운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연해 지방에서 손쉽게 약탈하기 어려워진 왜구들도 기병을 동원해 내륙 깊숙이 침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고려군의 공격을 받고 왜구들이 몰락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우왕 원년에는 전라도 지역에 대한 왜구들의 이렇다 할만한 침공이 없었고 오히려 우왕 2년부터 본격적인 침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우왕 2년 9월의 호남평야 지역에 대한 침공으로 인한 피해와 충격이 컸다. 따라서 고려 조정의 전라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면세조치와 조운을 육운으로 변경한 것도 우왕 원년이 아닌, 2년 윤9월에 취한 조치였다.

우왕 2년 9월의 호남평야에 대한 침공이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때부터 왜구들이 기병을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왜구들이 기병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도 나종우가

언급한 것처럼, 왜구의 침공으로 인해 연해 지방에서 미곡 생산이 격감했으며 그 결과, 고려 조정이 조운을 육운으로 변경시킨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조치가 실시된 것은 우왕 2년 윤9월인데 왜구의 최초 기병 동원은 그보다 앞선 9월이기 때문이다. 즉 왜구의 기병 동원은 고려의 왜구 대책, 즉 ‘조운의 육운화’ 조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왜구들의 내부 사정, 즉 당시 규슈의 군사 상황에서 찾아야한다.⁸⁷⁾

그리고 왜구들이 기병을 활용해 내륙 깊숙이 침공하기 시작한 것이 왜구들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라고 한 나종우의 평가도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고려군이 왜구와 싸워 확실하게 큰 전과를 올린 전투 7 사례 중 6은 해안 · 하안 · 해상 등 모두 내륙 깊숙한 곳이 아닌 바다와 가까운 곳을 전장으로 한 것이었다. 오히려 왜구들은 동해안에 상륙해 수도 개경을 위협할 정도로 이동에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내륙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도 고려군을 압도했을 정도였다.

세 번째로 필자는 목은 이색의 분류에 의거하여 고려 말 왜구의 침구 양상을 세 시기로 분류하였으나 제Ⅲ단계 즉,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수준”의 근거로 “수도권 해역에 대한 왜구의 연속적인 침구”가 오류임을 밝혔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제Ⅲ단계를 우왕 2(1376)년부터 우왕 11(1385)년으로 규정한 것에 반해 우왕 9(1383)년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제Ⅲ단계의 근거로 첫째로 27개월 동안 지속된 침공, 둘째로 침구 지역의 급증 및 공격적인 군사 행동, 셋째로 기병을 활용한 내륙 깊숙한 지역에 대한 침공 등을 새로 제시하였다.

우왕 9(1383)년을 마지막 정점으로 이후 왜구의 침구는 급격하게 진정되어간다. 우왕 10(1384)년에는 여섯 달 동안만 왜구가 침구하는데 그쳤으며, 우왕 11(1385)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왜구의 침구가 기록에 보이지만 이미 그 위협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⁸⁸⁾ 그리고 우왕 12(1386)년에는 단 한 차례의 왜구 침구도 사료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고려 말 왜구의 최고 극성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우왕 2(1376)년부터 우왕 9(1383)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왜구의 침입이 최고 절정에 도달했던 배경이 나종우와 김기섭이 지적한 바, 고려의 정책 변화, 즉 ‘조운의 육운화’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87) 이에 관해서는 조만간 별도의 기회를 빌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88)

【토론문】

한일관계사학회 제208회 월례발표회 (2023. 6. 10.) 제1발표 토론문

고려 말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 및 그 해석에 관한 선행연구의 비판적 고찰

- 고려 우왕 2(1376)년 9월 전후를 중심으로 -

발표자: 이 영 (방송대)

토론자: 송종호

이영 교수님이 이번 발표에서 다루신 주제는 고려말 왜구 침구 양상의 단계 구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왜구 침구 양상의 단계가 명확히 설정될 수 있다면, 그 각 단계 별로 침구 활동을 한 왜구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왜구 활동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 단계 별로 고려가 어떤 대비를 하였는지 등의 여러 쟁점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수십년 간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 간에 논의된 왜구론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심층 연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교수님의 이번 발표는 학문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영 교수님은, 예전 2012년 연구⁸⁹⁾에서 교수님이 제시하셨던 내용 중, ① 제Ⅲ단계, 즉 “마치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수준”의 종료 시점이 1385년이 아니라 1383년이라는 점, 그리고 ② 제Ⅲ단계에서의 왜구 활동의 특성이 “수도권 해역에서의 연속적 침구”라기 보다는 “장기간의 연속적 침구, 광역적·공격적 침구 및 기병을 활용한 내륙 지역 침공” 등에 있다는 점을 새롭게 논증하셨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증 과정에서, 왜구 침구 양상에 관한 자료 내용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증을 이끌어 주신 방법론은, 향후 후학들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수님의 예전 견해 일부를 스스로 정정해 주셨다는 점에서, 후학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선행연구 관련입니다. 이번 발표문 중 그 관련 선행연구로서 김기섭 교수님, 나종우 교수님, 이영 교수님의 연구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연구들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일본에서의 선행연구에 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교수(1961)는 그 저서의 내용으로부터 ① 전개기(1350~1374), ② 극성기(1375~1388), ③ 감퇴기(1389~조선초)를 전제하고 있음⁹⁰⁾이 보입니다.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 교수(1967)는 이를 ① 초기(1350~1373), ② 중기(1374~1389), ③ 종언기(1390~조선초기)로 명확히 나누고 있는데,⁹¹⁾ 일견 단순히 침구 빈도에 의한 구분이었던 듯합니다. 일본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들이 갖는 의미 내지 시사점에 관하여 비판과 설명을 더해 주시면, 이번 발표의 학문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왜구 침구 양상의 단계 구분 관련입니다. 이번 발표의 취지 중 하나는, 제Ⅲ단계의

89) 이영(2012),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181~212쪽.

90) 田中健夫(1961),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1~14쪽 참조.

91) 田村洋幸(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34~35쪽 참조.

종료 시점을 기존의 1385년에서 1383년으로 앞당기셨다는 점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서술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문에서는 각주 88번으로 할애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이 아직 미완성으로 보입니다.

특히 발표문 17쪽의 <표14>에 월별 침구 상황이 요약되어 있는데, 1383년과 1385년 사이에도 침구가 없던 7개월의 공백기만 빼면 1385년 11월까지 다시 15~18개월 연속으로 침구가 이어집니다. 이 7개월 간의 공백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1383년과 1385년의 왜구 침구 양상에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관한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셋째 질문은 둘째 질문과 연결되지만, 역시 단계 구분 관련입니다. 교수님의 발표문 20쪽 <표16>에 의하면, 제II단계가 1372~1375년으로 되어 있고, 제III단계가 1376~1379년의 A단계, 1380년~1383년의 B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기 4년 동안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II단계와 제III단계 간의 침구 양상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명확히 정리해 주셨는데, 제III단계 중 A단계와 B단계 간의 차이점 내지 그 획기(劃機)에 대해서는 발표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표문 20쪽에 쓰셨듯이, 일단 A단계와 B단계 간의 차이점으로서 침구 횟수에서의 차이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 점 외에 다른 측면은 없을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질문 역시 단계 구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발표문에서 제III단계는 1383년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1383년~1392년 및 조선초 시기는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런지요? 특히 조선초 왜구 역시 고려말 왜구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알려 주시면 향후 연구에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두서 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발표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18세기의 역사서술
：新井白石와 對馬藩의 기록을 중심으로

발표 : 이해진(동국대학교)
토론 :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제2주제】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18세기의 역사서술 : 新井白石와 對馬藩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해진(동국대)

1. 머리말
2. 對馬藩이 막부에 제출한 기록
 - (1) '게이초 6년설'에서 '게이초 4년설'로
 - (2) 雨森芳洲의 『隣交始末物語』
3. 新井白石의 역사서술
 - (1) 『國書復號紀事』
 - (2) 『殊號事略』
4. 맺음말을 대신하여

1. 머리말

18세기 초는 에도시대의 대외관계가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전환을 맞이한 시기였다.¹⁾ 이 무렵 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의 취임과 함께 막부 정치의 자문역을 맡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당시 가시화된 막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개혁을 주도하였다. 먼저 하쿠세키는 1711년 통신사의 聘禮 개혁²⁾ 과정에서 접대 의례를 간소화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였다. 이어서 17세기 말에 막부가 실시한 화폐 개주 정책의 악영향을 타개하기 위하여 화폐의 품위를 개주 이전으로 되돌려 경제적 혼란을 억제하는 良貨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쿠세키는 해외로의 금은 유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나가사키(長崎)의 무역량을 축소하는 쇼토쿠 신례(正徳新令, 이른바 '海舶互市新例')를 기획하였다. 이 개혁안은 막부의 승인하에 1715년에 반포되었다.

하쿠세키의 통신사 聘禮 개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는 조선과의 관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찾아왔으며, 이와 더불어 조일 관계를 중개하던 쓰시마번에게도 그 영향이 미쳤다. 막부의 화폐 개주 정책에서 비롯한 수출용 은의 품질 하락은 조선 무역의 침체로 이어졌다. 이로부터 시작된 경제난의 타개책으로서 쓰시마번은 조선에 수출할 은에 한정하여 이전 비율로 되돌리는 '人參代往古銀'의 특주를 막부에게 청원하여 허가받았다.³⁾ 이를 통해 쓰시마번은 조선 무역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재정난은 크게 만회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번의 '役儀'라고 자부

1) 18세기 초 일본의 정치 및 외교 양상에 관해서는 荒野泰典, 「近世の東アジアと日本」,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1988(1985 初出); 高埜利彦, 「18世紀の日本」, 『岩波講座 日本通史』 近世3, 岩波書店, 1994 참조.

2) 1711년 통신사의 聘禮 개혁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宮崎道生, 『新井白石の研究』, 吉川弘文館, 1958; 三宅英利, 「新井白石の制度改革と通信使」, 『近世日朝関係史の研究』, 文献出版, 1986; 민덕기,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2007(1994 初出) 등이 있다.

3) 쓰시마번의 조선 무역 추이 및 '人參代往古銀' 특주 청원 교섭에 관해서는 田代和生, 『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참조.

해왔던 통신사의 접대조차 곤란해져 1711년에는 막부에 차용금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⁴⁾

조선 무역의 부진과 재정난으로 막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쓰시마번에서는 조일 양국의 중간에 놓인 존재적 모순을 극복하고 점차 일본으로의 귀속 의식을 높여가는 사상적 움직임이 있었다.⁵⁾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을 반영한 역사서술의 성립은 같은 시기에 시작된 이른바 ‘조일 관계의 기록의 시대’⁶⁾를 이루는 하나의 지류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발표자는 17세기 동안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막부와 쓰시마번의 역사서술이 성립한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막부가 조일 관계의 역사를 다룰 때 쓰시마번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생긴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⁷⁾ 이러한 방향성은 18세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 쓰시마번은 막부에 대한 청원 과정에서도 조일 통교의 내력을 적은 기록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권을 주장하는 자신들의 논리에 역사적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이러한 역사서술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편 주지하는 바와 같이 1711년 통신사의 도일 때에 하쿠세키는 쇼군의 외교적 칭호를 ‘日本國 大君’에서 ‘日本國王’으로 개정해야 함을 주장하여 이를 실현에 옮겼다. 이후 하쿠세키는 1712년에 『國書復號紀事』를, 그리고 1716년에는 『殊號事略』을 집필하여 외교사적 전례를 통해 ‘國王’호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⁸⁾ 이에 본 발표의 제3장에서는 하쿠세키가 남긴 두 편의 저서에 담긴 국교회복에 관한 역사서술의 성격 및 특징을 검토하고, 쓰시마번 측 기록과의 관계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하쿠세키의 역사서술이 지닌 목적성과 관련하여 강화교섭 과정에서 1606년에 이에 야스가 조선에 보내었다고 하는 이른바 ‘家康 國書’의 진위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偽造說’, ‘改書說’, ‘眞書說’로 크게 연구자들의 견해가 엇갈리지만,⁹⁾ 그 판단은 일단 유보하겠다. 다만 본 발표에서는 ‘家康 國書’의 답신으로 간주된 1607년의 宣祖 國書가 실제로 두 종류 전래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에서건 宣祖 國書의 개작 자체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만을 전제로 삼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과 관련하여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역사서술 속에 인용된 사료의 존재이다. 각 역사서 속에 첨부된 국교회복 시기의 외교문서가 ‘家康 國書’의 실재 여부에 대한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작성 주체가 지향하는 역사적 논리의 구축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후발 기록이 선행하는 기록 속에 수록된 사료를 인용하고, 또는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서술의 계보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4) 1711년에 쓰시마번이 통신사 접대 비용을 대차하기 위하여 막부 측과 벌인 교섭에 관해서는 古川祐貴, 「対馬宗家の対幕府交渉: 正徳度信使費用拝借をめぐる」, (荒武賢一朗 編) 『世界とつながる 起点としての日本列島史』, 清文堂出版, 2016 참조.

5) 이에 관해서는 米谷均, 「近世日朝関係における対馬藩主の上表文について」, 『朝鮮学報』 154, 1995; 石川寛, 「対馬藩の自己認識: 「対州の私交」の検討を通じて」, (九州史学研究会 編) 『境界のアイデンティティ』, 岩田書院, 2008 등을 참조.

6) 長正統, 「日鮮関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学報』 50-4, 1968.

7) 이해진,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에도시대의 역사서술: 17세기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8, 2022. 이와 같은 방법론은 에도막부의 역대 편찬사서 사이의 관계성을 다룬 平野仁也, 『江戸幕府の歴史編纂事業と創業史』, 清文堂, 2020으로부터 착상한 바가 크다.

8) 宮崎道生, 주 2) 저서; 민덕기, 주 2) 저서 참조.

9) ‘家康 國書’의 진위를 둘러싼 연구사는 米谷均, 「近世初期日朝関係における外交文書の偽造と改竄」,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41-4, 1995; 김경태, 「임진왜란 후 강화교섭기 국서문제의 재검토」, 『韓國史學報』 36, 2009의 설명을 참조.

2. 對馬藩이 막부에 제출한 기록

(1) ‘게이초 6년설’에서 ‘게이초 4년설’로

1683년에 막부는 창업사 집필을 위한 자료 제공을 각 다이묘에게 의뢰하여 수합한 자료를 이듬해에 『貞享書上』로 정리하였다. 이때 쓰시마번은 막부가 의뢰한 역대 쇼군의 하달 문서 이외에 조선 통교의 내력을 적은 「朝鮮通交覺書」라는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 목적은 이에야스의 지시로 재개된 조선 통교가 도쿠가와 정권의 성립 직후부터 쇼 가문이 관장해 온 고유의 역할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¹⁰⁾ 또한 이는 이전부터 쓰시마번이 조선 어용로주(朝鮮御用老中)¹¹⁾에게 조선 통교의 현황을 주지시키기 위해 제출해왔던 「朝鮮通信之覺書」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내용을 제외하고 발췌한 것이었다. 쓰시마번은 조선어용로주의 교체 때마다 「朝鮮通信之覺書」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1704년에 쓰치야 마사나오(土屋政直)에게 제출된 기록은 조일 국교회복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朝鮮陣 이후 일본과 通用이 시작된 일

- 一. 게이초 6 신축년(1601)에 제 고조부 쓰시마노카미(對馬守) 요시토시(義智)가 처음으로 상경하여 후시미(伏見)에서 곤겐(權現)[이에야스]님을 알현하였을 때 말씀하시기를, “조선은 이웃 나라로 예로부터 통교해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한 차례의 전란으로 通用이 끊겨버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대가 재량껏 和好를 다지도록 하라. 저 나라[조선]가 같은 마음을 품은 모양새라면 公儀의 지시라 통지하도록 하라. 만일 적대하는 형세가 있다면 그대로는 놔두기 어렵다. 군사를 보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명심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시토시는 쓰시마로 돌아왔으며, 이후에도 서한을 보내셔서 화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라는 뜻을 지시하셨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사신을 보내었지만, 한결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쓰시마는 예로부터 約條한 배를 보내 교역의 길을 통하여 오랫동안 通用해 왔는데, 히데요시 공이 이유 없이 병사를 일으켜 죄 없는 인민을 수도 없이 죽였다. 게다가 쓰시마노카미는 진중에서 선봉을 맡아 王都를 파괴하고 국왕의 丘墓도 파헤쳤으니, 조선이 亡國에 이른 원한은 잊을 수 없다. 게다가 매사 大明의 지시를 받고 있으니 사사로이 通交하기는 어렵다”라고 거절하였으며, 치세가 바뀐 것도 전혀 참이라 믿지 않고 사자도 두 차례까지 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구하여 전쟁 때 각 지역에 잡혀 온 조선인 수백 명을 여러 차례 송환하였습니다. 특히 사쓰마에 잡혀 와있던 조선 국왕의 일족 金光이라는 자를 되돌려보낼 때 쓰시마에서 필담으로 양국의 통교 건을 부탁하고 사신을 붙여 송환하였더니, 곤겐님의 치세가 되어 일본이 평화로워진 상황과 정치 등을 金光이 저 나라에 상세히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서한을 수령하여 通交의 길이 조금이나마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층 더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게이초 9 갑진년(1604) 가을에 저 나라에서 松雲大師와 孫文彥이라는 자를 보내었습니다. 이듬해 을사년(1605) 봄에 요시토시가 동행하여 상경하였더니 후시미에서 알현을 명하였으며, 혼다 사도노카미(本多佐渡守)[혼다 마사노부]와 兎長老[세이쇼 조타이(西笑承兌)]로 하여금 和交의 일을 상세히 전하셨습니다. 곧이어 두 사신이 귀국하여 위의 일을 그 나라에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同 12 정미년(1607)에 三使 呂祐吉·慶暹·丁好寬이 건너왔습니다. 지시에 따라 에도(江戸)로 올라가 다이토쿠인(台徳院)[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님께 예를 올리고, 귀국하는 길에 스푸(駿府)에서 곤겐님께 배례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화의

10) 이해진, 주 7) 논문, 320쪽.

11) 幕閣 내에서 조선 관계와 관련한 제반사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은 조선어용로주에 관해서는 古川祐貴, 「対馬宗家と朝鮮御用老中」, 『日本歴史』 831, 2017 참조.

가 완전히 이루어져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通用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1704년에 쓰시마번이 제출한 『朝鮮通信之覺書』는 이에야스의 강화교섭 지시가 1601년에 하달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貞享書上』에 수록된 「朝鮮通交覺書」도 이른바 ‘게이초 6년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역사서술이 이루어진 배경으로서는 1600년의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를 도쿠가와 創業史의 계기로 간주하는 막부 측의 역사 인식과 절충을 꾀하고자 한 쓰시마번의 의도를 상정해볼 수 있다.¹²⁾ 덧붙여 이 단계의 역사서술에는 아직 ‘家康 國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쓰시마번 내에서는 국교회복 당시 조선과 주고받은 서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화교섭의 개시 시점을 1599년으로 설정하는 역사서술이 확립되었다. 1686년에 집필한 번주 소(宗) 가문의 족보인 『宗氏家譜』는 1600년에 조선 측이 처음으로 보내온 답신(이른바 ‘邊將’의 書契¹³⁾)을 인용하여 이에야스의 강화교섭 지시는 그보다 앞선 1599년(게이초 4년)에 하달되었다고 서술하였다.¹⁴⁾ 이처럼 17세기에 쓰시마번이 남긴 기록들 속에는 막부에 제출된 ‘게이초 6년설’과 내부에서 통용된 ‘게이초 4년설’이 병존하였다. 이후 쓰시마번이 막부에 처음으로 ‘게이초 4년설’을 이야기한 것은 1711년에 제출한 『日本朝鮮和好再興之次第』(이하 『和好次第』)를 통해서였다.

1711년의 통신사 접대 비용의 대차 청원을 위해 에도(江戸)에 파견된 쓰시마번 家老 히라타 나오에몬(平田直右衛門)은 교섭이 끝날 무렵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하쿠세키에게 번주 명의로 작성한 한 통의 「覺書」를 제출하였다. 이는 조선 무역이 국교회복 당시 이에야스로부터 領地 지급 대신 허락된 권리이자 번 고유의 역할로 정해진 通交 및 변경의 武備를 다질 재원이었으나 최근에는 교역의 부진으로 그 수급이 곤란해졌으며, 게다가 실질적으로 武備가 긴요해질 때 교역은 유지될 수 없기에 이를 대신할 영지의 지급을 청원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¹⁵⁾ 그리고 이와 함께 쓰시마번이 제출한 『和好次第』는 「覺書」 속에서 이야기하는 조일 국교회복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해설서였다. 해당 기록 중에서 이에야스가 당시 쓰시마의 島主였던 소 요시토시(宗義智)에게 강화교섭을 지시한 경위를 서술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일본과 조선의 隣好는 분로쿠(文祿) 元 임진년(1592)의 朝鮮陣 이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이초 4 기해년(1599) 현 쓰시마노카미의 고조부 쓰시마노카미 요시토시가 곤겐님께 말씀들을 듣기를, “조선은 이웃 나라로 예로부터 通交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한 차례의 전란으로 通交가 단절된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 쓰시마노카미의 재량으로써 和好를 다지도록 하라. 저 나라가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公命이라고 이야기하라. 만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적대하는 형세라면 그대로는 둘 수 없다. 병력을 보내야 할 것이니, 이 뜻을 명심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직 인사를 드리고 쓰시마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서한을 통해 화의를 다지도록 힘쓰라는 뜻을 지시하셨습니다. 따라서 게이초 4년에 첫 번째로는 가게하시 시치타유

12) 이해진, 주 7) 논문, 326쪽.

13) 그러나 이른바 ‘邊將’의 書契에는 ‘貴邦’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실제로는 쓰시마 측이 아니라 1599년에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데라자와 마사나리(寺澤正成)가 連署해서 조선에 보낸 書契에 대한 禮曹參議의 답신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洪性德, 「壬辰倭亂 直後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한일관계사연구』 3, 1995, 53~54쪽; 荒木和憲, 「壬辰戦争」의 講和交渉」, (関ログローバル研究会) 『SGRAレポート』 86, 2019, 각주 (3) 참조). 본 발표에서는 사료의 표기대로 ‘邊將’의 書契로 통칭하겠다.

14) 이해진, 주 7) 논문, 322~325쪽 참조.

15) 田代和生, 「対馬藩經濟思想の成立」, 『日朝貿易と対馬藩』, 創文社, 2007(2000 初出), 55~59쪽. 또한 해당 논문은 「覺書」와 『和好次第』의 全文을 수록하였다(63~70쪽).

(梯七太夫)라는 자를, 두 번째로는 요시조에 사콘(吉副左近)을, 同 5년(1600)에 세 번째로는 유타니 야스케(柚谷彌助)를 저 나라에 보내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중략) 치세가 바뀐 것도 전혀 참이라 믿지 않고, 모두 합쳐 세 차례나 사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서한의 답신도 없었습니다. 同 5년에 네 번째로 이시다 진자에몬(石田甚左衛門)을 사자로 서한을 보내었더니 드디어 이때 사자도 돌려보내고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답신은 별지에 있습니다> (중략) 게이초 10년(1605) 2월에 곤겐님과 다이토쿠인님이 상경하셔서 입결하신 뒤, 조선의 두 사신[松雲大師·孫文彥]에게 후시미에서 알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곤겐님께서 혼자 사도노카미님·조타이 長老를 上使로 보내 요시토시를 통해 두 사신에게 전하시기를, “好를 통하고 交를 맺음은 양국의 이익이다. 서로 과거의 원한을 잊고 오래도록 隣交를 맺고자 한다”라고 和交의 일을 상세히 이야기하였더니 두 사신은 삼가 받아 듣고 안도하였습니다. (중략) 그 후 하직 인사를 고하고 두 사신을 데리고 쓰시마로 내려가 조선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화목의 답도 없어 불안하던 차에 게이초 11년(1606) 7월에 드디어 禮曹參議 成以文이 답신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답신은 별지에 있습니다> 요시토시가 위의 답신을 보고드렸더니 또한 곤겐님께서 서한을 조선에 보내시어 다시금 통교를 청하셨으므로, 저 나라가 잘 알아들어 통교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게이초 12년(1607)에 조선 왕이 통교의 信使로서 (후략)¹⁶⁾

이처럼 『和好次第』에 수록된 이에야스의 지시 내용은 과거 『朝鮮通信之覺書』와 대체로 같으나, 그 시기를 ‘게이초 4년(1599)’이라고 한 점에 차이가 있다. 이로부터 해당 기록은 1607년의 통신사 도일에 이르는 교섭 경위에 이어서 1609년에 “쓰시마노카미 자신의 歲條船 및 교역 등”을 복구한 일(己酉約條)까지를 서술한다. 한편 물결선 부분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사료는 2차례 “답서는 별지에 있다”라고 하여 현존하는 판본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본래 제출된 문서에는 조선으로부터 수령한 외교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는 조선 외교와 관련한 번의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 중에서도 특히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혹은 그 주변 인물인 마쓰우라 가쇼(松浦霞沼) 등이 『和好次第』의 집필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⁷⁾

이 중에서 첫 번째가 강화교섭 중에 조선이 처음으로 보낸 답신인 ‘邊將’의 書契로, 해당 기록부터 새로이 제시된 ‘게이초 4년설’을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1606년에 “禮曹參議 成以文으로부터” 보내어진 書契이다. 이는 강화교섭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선이 일본 측의 강화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목적으로 이에야스 측의 ‘先爲致書’와 ‘犯陵賊’의 압송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 서계의 인용에 이어서 해당 기록은 요시토시의 보고 후에 “곤겐님께서 서한”을 보내자 이에 납득한 조선이 통신사를 파견함으로써 통교가 수립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즉 成以文의 書契를 근거로 『和好次第』는 그동안 쓰시마번이 막부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던 ‘家康 國書’의 실재를 주장한 것이다.

(2) 雨森芳洲의 『隣交始末物語』

한편 쇼토쿠 신례의 입안 과정이던 1714년에 막부는 조선 무역과 류큐(琉球) 무역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쓰시마번과 사쓰마번(薩摩藩)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쓰시마번에서는 하쿠세키와 동문이었던 호슈를 에도에 파견하여 지시사항을 철회하게끔 설득하도록 지시하였다. 본 절에서 검토할 『隣交始末物語』는 해당 교섭 과정에서 조선 통교의 이력을 상세히 적은 기

16) 『日本朝鮮和好再興之次第』(일본 國立公文書館 디지털 아카이브, 청구번호 178-0515). 이하의 인용 사료에서 < > 안의 내용은 割註이다.

17) 田代和生, 주 15) 논문, 62쪽.

록이 있다면 제출해달라는 마사나오의 요청에 따라 호슈가 집필하여 마사나오와 하쿠세키에게 제출한 것으로, 역사서술과 논평의 형식을 빌려 1711년 이래로 쓰시마번이 막부에 제출해온 청원서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조선 무역이 쓰시마의 武備를 다지는 재원이자 국교회복 이래로 이에야스가 하사한 고유의 권리라고 주장하던 기존의 논리를 수정하여, 전시에 유명무실해질 무역 대신 영속적인 재원이 될 새로운 토지의 지급으로 청원의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호슈의 논리를 집약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결국 해당 기록의 제출 후 호슈가 역설한 새로운 영지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막부가 조선 무역의 축소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교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¹⁸⁾

『隣交始末物語』는 먼저 조선의 지리와 역사를 간략히 소개한 뒤, 신라와 고려가 일본의 변경을 침략한 일에 관한 옛 기록의 내용과 몽골의 침략 때 쓰시마에 상륙한 여몽 연합군을 소가문의 선조가 죽음으로써 방어한 일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외국과 접한 사쓰마·나가사키·마쓰마에(松前)보다도 “일본에 抗衡하는 나라”인 조선을 상대하는 쓰시마번이야말로 “藩屏 제일의 要地”로서 武備가 긴요하다고 서술한다. 이어서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국교를 회복한 뒤부터 1636년에 이르는 통신사 파견의 역사 및 호슈 자신의 논평을 통해 번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 나간다.

이상과 같은 『隣交始末物語』의 내용 중 본 발표에서는 국교회복 과정에 관한 서술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해당 기록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사후에 이루어진 이에야스의 첫 지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게이초 3 무술년(1598) 8월 18일 도요토미 太閤이 세상을 떠나 천하의 事權이 진정한 주인에게 돌아갔다. 大小 侯伯이 東照大君[이에야스]께 명을 받아 같은 해 10월 중에 저 땅[조선]의 군사들이 연이어 돌아왔다. 이듬해 기해년(1599) 東照大君께서 쓰시마노카미 요시토시에게 명하시기를, “조선과 일본이 隣睦을 다진 일은 그 햇수가 일찍이 오래되었는데, 한 차례의 干戈에 이른 것은 실로 이유 없는 전쟁이었으니 무엇을 이에 비하겠는가. 무릇 好를 통하고 交를 맺음은 양국의 이익이다. 서로 과거의 원한을 잊고 오래도록 隣交를 맺어야 할 것이니, 그 뜻을 저 나라에 전하도록 하라”고 하셨다.¹⁹⁾

이처럼 『隣交始末物語』 또한 『和好次第』와 마찬가지로 이에야스가 처음으로 강화교섭을 지시한 일이 1599년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에야스의 강화교섭 지시를 ‘深慮’로서 높이 평가하는 호슈의 논평이 이어진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春秋傳』에 “親仁善隣은 나라의 보배이다”라고 하였듯이, 이웃 나라와 和好를 맺는 것은 천하를 보전하는 名君賢主의 도리였다.
- ②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조선 선왕의 墳墓를 파헤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보낸 서한에도 “不共戴天의 원수”라고 적을 정도였다. 따라서 언젠가 조선이 大明의 援兵을 간청하여 복수를 도모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또한 조선과 사신 왕래가 있던 때에는 御威光이 異國까지도 이르렀다고 보이기에, 국내의 인심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太平을 구가할 필요가 있었다.
- ③ 일찍이 신라가 일본을 침략하였으며 고려 때에는 元朝의 先導가 된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 조선과 隣好를 맺어 저 나라의 事變을 살피고 또한 일본의 武勇이 성한 것을 漢土에

18) 1714~1715년의 하쿠세키와 호슈의 교섭에 관해서는 田代和生, 주 15) 논문 참조.

19) 이하 『隣交始末物語』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宗家文書(정리번호 6587)를 참조하였다.

도 드러내어 脣亡齒寒의 근심을 없애는 保國永久의 계책이었다.

‘御威光’이나 ‘脣亡齒寒’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기록은 이에야스의 치적에 대한 저자의 논평 형식을 빌려 조선과의 통교가 어떠한 면에서 양국의 이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이는 1711년 통신사의 도일 무렵부터 세간에서 거론되던 조선 통교에 대한 회의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논리였다.²⁰⁾ 이어서 이에야스의 명을 받은 요시토시가 여러 차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한 결과, 4번째에 이르러 이른바 ‘邊將’의 書契가 도달하였다고 하며 그 全文을 인용하였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서한의 뜻을 쓰시마노카미 요시토시가 삼가 아뢰었다. 이듬해 게이초 6 신축년(1601) 후시미에 등성하여 처음으로 알현할 때 東照大君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선은 이웃 나라로 예로부터 通交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한 차례의 전란으로 通交가 단절되었음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和好의 일은 쓰시마노카미의 재량으로써 확실히 다져야 함이 마땅하다. 저 나라가 만일 거스르기에 이르러 무례한 형세가 있다면 그대로는 둘 수 없다. 병력을 보내야 할 것이니, 이 뜻을 명심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지엄히 내리셨다.

위의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던 『朝鮮通信之覺書』의 1601년 및 『和好次第』의 1599년 서술과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해당 기록은 1599년에 처음으로 이에야스가 강화교섭을 지시한 뒤, 요시토시가 이에야스를 후시미에서 알현하였던 1601년에도 재차 명령이 내려졌다고 이야기한다. 즉 기존의 ‘게이초 4년설’과 ‘게이초 6년설’을 병존시키려 한 점이 주목된다. 해당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 무역에 제한을 가하려 한 하쿠세키의 의견을 철회시키는 데에 있었으나, 그 집필의 직접적인 이유는 조선 통교의 내력을 상세히 서술한 기록의 제출을 쓰치야가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²¹⁾ 따라서 그 내용은 쓰시마번이 근년에 제출하였던 『和好次第』를 계승하면서도 이전부터 조선어용로주에게 헌상해왔던 『朝鮮通信之覺書』와도 모순이 없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었다. 『隣交始末物語』가 이에야스의 강화교섭 지시를 두 차례에 걸쳐 서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隣交始末物語』는 앞선 기록들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쓰시마의 포로 송환부터 1605년 松雲 일행의 도일 및 이에야스 접견까지의 교섭 경위를 다룬 뒤, 1606년에는 조선의 禮曹參議(成以文)가 요시토시에게 書契를 보내 이른바 先爲致書와 犯陵賊의 압송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 전해왔던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에 요시토시는 가신 이데 야로쿠자에몬(井手彌六左衛門)을 이에야스에게 보내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며,²²⁾ 이후 “東照大君께서 저 나라의 국왕에게 서한을 보내시고” 이와 더불어 犯陵賊을 잡아 보내자 1607년에 조선 국왕이 三使를 통해 國書를 보내어 답하였다고 하며 그 全文을 인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앞선 1711년에 쓰시마번이 하쿠세키에게 제출하였던 『和好次第』의 서술을 대체로 계승한 것이다. 다만 『和好次第』에 인용된 1606년에 이에야스의 先爲致書를 요구하는 成以文의 서계를 생략하고, 그 대신에 1607년의 宣祖 國書 全文을 수록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특히 이 國書는 “朝鮮國王李昞奉復日本國王殿下”로 시작하는 개작 이전의 것이기에 주

20) 이에 관해서는 田代和生, 주 15) 논문 외에 이해진, 「17세기 말~18세기 초 쓰시마번의 대막부교섭 논리 변화」, 『일본역사연구』 55, 2021, 31~33쪽 참조.

21) 田代和生, 주 15) 논문, 36쪽.

22) 『隣交始末物語』는 이때 이에야스가 기뻐하며 이데에게 하오리(羽織)와 백은을 하사하였으며, 이 하오리와 백은이 현재까지도 쓰시마의 창고 안에 보물로 간직되어왔다고 이야기한다.

목할 필요가 있다.

3.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新井白石의 역사서술

(1) 『國書復號紀事』

하쿠세키가 1712년에 집필한 『國書復號紀事』는 강화교섭이 진행 중이던 1606년에 이에야스가 통신사의 파견을 재촉하기 위하여 조선에 보내었다고 하는 ‘家康 國書’를 ‘國王’호 사용의 모델로 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하쿠세키는 해당 저서의 전반부에서 강화교섭의 경과를 설명한 뒤, 1636년에 ‘大君’호로 개정되기까지 조일 외교 속에서 ‘國王’호가 사용되었던 사례들을 다루었다.²³⁾ 이러한 역사적 경위와 함께 초대 쇼군 이에야스의 권위를 빌려 1711년의 ‘국왕’호 사용을 ‘國初朝宗之禮’로 되돌린 ‘復號’로서 규정하는 것이 해당 저서의 궁극적인 취지라 할 수 있다.²⁴⁾

이 중에서 강화교섭이 시작된 경위를 설명하는 『國書復號紀事』의 도입 부분은 아래와 같다.

勝國의 군주[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여 정벌한 것이 前後 7년으로, 先世의 원수를 갚았다는 말이 들렸으나 그 화가 또한 참담하였다. <先世의 원수’란 고려의 王氏가 원의 병졸을 인도하여 우리의 서쪽 변경을 침략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對州[쓰시마]에 조선과 강화하고 옛 우호를 다시 다질 것을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州의 사자가 여러 차례 조선에 갔으나, 돌아오지 못했다.

처음에 州에서 가게하시 시치타유를 보낸 지 오래되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에는 요시조에 사촌을, 이어서 유타니 야스케를 보내었으나 모두 돌아오지 못하였다. (중략) 이 해 경자년 겨울에 <개이초 5년(1600)> 비로소 답서를 얻어 돌아왔다. 무릇 이 시기에 저들 [조선] 또한 이미 上國[明]이 주둔시킨 장졸들의 교만함이 몹시 심한 것을 꺼려 우리와 화평하여 근심을 덜고자 하였다.

州의 사신 이시다 진에몬(石田甚右衛門)이 비로소 답서를 받아 돌아왔다. 그 글은 姓名을 적지 않았으나, 전하기를 저 나라의 邊將이 답한 바라고 한다. 글은 전부 『續方策合編』에 실어두었으므로, 적지 않았다. 이후는 모두 이에 근거한다.²⁵⁾

이처럼 해당 기록은 강화교섭을 지시받은 쓰시마 측이 세 차례에 걸쳐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돌아오지 못한 경위를 서술한 뒤, 1600년 ‘겨울’에 이르러 네 번째 사신인 ‘이시다 진에몬’²⁶⁾이 비로소 ‘邊將’의 답서를 받아왔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그 답서의 내용은 하쿠세키

23) 『國書復號紀事』의 후반부에서는 먼저 1711년 통신사 당시 ‘國王’호 사용에 관한 막부 내의 논의과정에 이어서 빙례 개혁의 실현을 위한 여러 차례의 교섭 양상을 쓰시마번 측과 통신사, 그리고 하쿠세키 자신이 주고받은 서한을 인용하면서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1617년 이후 國書에 사용된 ‘國王’호는 개작된 것이었으나, 이를 통해 오히려 올바른 體式이 이루어졌음을 하쿠세키 본인이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어서는 다방면에 걸친 1711년의 빙례 개혁 과정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서신을 인용하며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통신사 초빙 단계에 이루어진 쓰시마번 측과 조선의 교섭, ②여정 중의 접대 의례 개정을 둘러싼 통신사 측과의 논쟁(특히 막부가 파견한 上使에 대한 階下迎送 문제), ③에도성 御前の 쇼군 알현 의례 개정과 관련한 통신사 측과의 논쟁, ④회답 國書의 避諱 문제로 양국이 國書를 改書하여 재교환하기까지의 경위를 다룬다.

24) 민덕기, 주 2) 저서, 328~329쪽 참조.

25) 新井白石, 『國書復號紀事』(『新井白石全集』第四, 國書刊行會, 1977, 695쪽).

26) 다른 기록과 비교하면 이시다 진자에몬(石田甚左衛門)의 誤記로 보인다.

의 다른 저서인 『續方策合編』에 기재하였기에 다시 수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즉 『國書復號紀事』 속에서 하쿠세키는 ‘邊將’의 書契라는 사료를 기반으로 강화교섭이 ‘게이초 5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기술한 것이다.

하쿠세키가 ‘國王’호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신사의 내빙 전후에 국교회복 시기의 외교문서를 발굴하는 데에 진력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²⁷⁾ 실제로 『國書復號紀事』는 『海東諸國記』, 『懲毖錄』, 『攷事撮要』 등 조선의 서적을 다수 인용하였기에, 하쿠세키가 심혈을 기울여 축적해온 조선 외교에 관한 지식이 반영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단 ‘邊將’의 서계는 『續善鄰國寶記』와 같은 기록에도 수록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쓰시마번 이외에 일본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던 신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쿠세키가 별도의 사료 조사를 통해 그 존재를 파악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國書復號紀事』의 집필 이전에 하쿠세키가 해당 사료를 접할 기회가 한 차례 있었다. 바로 1711년에 쓰시마번 측이 하쿠세키에게 제출하였던 『和好次第』를 통해서였다.

더욱이 『國書復號紀事』는 마찬가지로 『和好次第』에 첨부되었던 1606년의 成以文 書契도 ‘禮曹書略’으로서 참조하였다. 이 成以文의 書契를 통해 조선은 일본 측에 ‘先爲致書’를 요구하였으며, 그에 대한 일본 측의 답신이 바로 ‘家康 國書’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하쿠세키는 “생각건대 이때의 國書는 조타이가 撰하였으나, 내가 엔코지(圓光寺)와 곤치인(金地院) 등의 장서에서 원고본을 찾아보았지만 얻을 수 없었다”²⁸⁾라고 하여 이를 직접 인용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조일 외교의 전례를 통해 ‘國王 復號’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였던 하쿠세키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근거인 ‘家康 國書’의 부재라는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쓰시마번의 기록 속에 담긴 조선의 書契를 통해 간접적이거나 ‘家康 國書’의 실재성을 주장함으로써 ‘國王’호 사용의 원형을 확보한 것이다.

(2) 『殊號事略』

다음으로 하쿠세키가 1716년에 집필한 『殊號事略』은 上·下 두 권으로 편집된 저서이다. 해당 저서는 앞선 『國書復號紀事』가 다루었던 국교회복 이후의 조일 외교 사례 외에도, 上卷에서는 고대 이래로 외교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왔던 다양한 호칭(殊號)을 다루면서 ‘國王’호 사용의 전례를 논하였으며, 下卷에서는 이에야스의 치세 이래로 다른 나라들과 주고받았던 외교문서 속에서 사용된 칭호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國王’호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殊號事略』의 내용 중에서 먼저 上卷에서 국교회복의 경위를 서술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當家 치세의 조선인 來聘 書式 件

게이초 5년(1600) 세키가하라 전투 후 천하가 神祖[이에야스]께 귀의하였다. 同 7년(1602) 쓰시마노카미 요시토시 <對州의 태수>가 에도로 參勤하였다. 神祖께서 요시토시에게 말씀하시기를, “太閤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한 후 양국의 교신이 단절되었다. 저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화목을 청한다면 이전과 같이 통신을 허락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우리나라의 농민에게 저 나라의 미곡을 배어오도록 할 것이다. 이 일을 저 나라에 고하고 그 답을 이야기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요시토시가 곧바로 壽命을 조선국에 고지하자, 저 나라의 왕이 크게 놀라 同 9년(1604)에 승려 松雲에게 孫文或이라는 관인을 붙여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보내 화평을 간청

27) 가령 민덕기는 하쿠세키가 ‘家康 國書’의 초고를 찾기 위하여 실시한 사료 조사의 성과로서 이신 스덴(以心崇傳)의 『異國日記』를 발굴한 것을 이야기하였다(민덕기, 주 2) 저서, 351쪽)

28) 新井白石, 『國書復號紀事』(『新井白石全集』第四, 國書刊行會, 1977, 696쪽).

하였다. 쓰시마노카미가 먼저 두 사신을 쓰시마에 체류시켜 두고, 家老 야나가와 시모쓰케노카미(柳川下野守)[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를 에도로 보내 아뢰었다. 神祖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을사년(1610)에 히데타다 공을 대동하고 上京할 것이다. 그 기회에 사신의 예를 받겠다. 두 사신을 교토로 데려오도록 하라”고 하셨다. 동 10년(1610) 쓰시마노카미가 두 사신을 교토로 데려와 臺顏을 배알하게 하였다. 일이 끝난 뒤 혼다 사도노카미 마사노부를 쓰시마노카미의 객관에 보내시어 조선국과의 통신을 허락하셨다. “내년 병오년(1611)에 천하를 히데타다 공에게 물려줄 것이다. 근년 중에 조선 왕으로부터 사신을 보내 축하하도록 해야 한다. 松雲은 僧徒이니 사신이라고 할 수 없다. 관인을 사신으로 삼게끔 하라”고 말씀하셨다. 쓰시마노카미가 곧바로 松雲과 文彥에게 말을 전하자 저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게이초 12년(1607) 조선 국왕이 三使에게 히데타다 공의 승계를 축하하게 하였다. <이때의 삼사는 呂祐吉·慶暹·丁好寬이었다> (중략) 이때 히데타다 공에게 바친 글에 ‘朝鮮國王姓某奉書日本國王殿下’라고 적었으며, 그 답서에 ‘日本國源秀忠奉復朝鮮國王殿下’라고 적었다.²⁹⁾

이처럼 『事號事略』의 上卷은 이에야스의 국교회복 지시를 1602년에 일어난 일로 서술하였다. 이전 에도시대의 역사서 중에서 ‘게이초 7년설’을 채택한 것으로는 1670년에 하야시 가호(林鵞峰)의 주도하에 막부가 편찬한 『本朝通鑑』을 꼽을 수 있다.³⁰⁾ 즉 고대 이래 ‘本朝’의 외교사를 망라한 上卷이 『本朝通鑑』을 참조³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게이초 7년설’을 계승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이에야스가 조선이 먼저 화의를 청해온다면 이를 수락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 내용도 『本朝通鑑』의 서술과 일치한다. 단 “그렇지 않으면 매년 우리나라의 농민에게 저 나라의 미곡을 배어오도록 할 것이다”와 같이 조선에 위협을 가하라는 지시는 본래 『本朝通鑑』에 수록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런데 『事號事略』의 下卷은 아래와 같이 이에야스의 국교회복 지시가 하달된 시점을 上卷과는 다르게 설정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게이초 3년(1598) 8월 太閤 히데요시가 사거하시자 일본군은 모두 군사를 물렸다. 同 5년 9월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나고 66州가 모두 도쇼구(東照宮)[이에야스]에게 귀복하였다. (중략) 이 해[1601] 소 쓰시마노카미 요시토시와 그 가신 야나가와 부젠노카미 시게노부 등에게 명을 내려 일본과 조선의 화의 건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對州의 사신이 조선에 이르렀던 일이 이미 세 차례였으나, 모두 大明의 鎭將으로 인하여 생포되어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 해에 요시토시·시게노부 등이 명을 받은 후에 파견한 사신이 비로소 저들 東萊府의 답서를 얻어 돌아왔다.

처음 게이초 3년 무술년(1598)부터 이 해 신축년(1601)까지 對州의 사신이 조선에 간 것이 여러 차례에 이르렀다. 첫 사신은 가게하시 시치타유, 두 번째 사신은 요시조에 사콘, 세 번째 사신은 유타니 야스케로, 이들은 모두 大明의 鎭將에게 생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되었다. 네 번째 사신인 이시다 진자에몬이 비로소 저 나라의 답서를 얻어 돌아왔다. 단 이 서신은 저들 동래부사가 시게노부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 해[1606] 가을에 조선의 禮曹가 쓰시마노카미에게 글을 보내 먼저 우리나라의 서신(御書)을 받아야겠다는 뜻을 요망해왔다. 이에 따라 이 해 겨울에 도쇼구께서 저들 국왕에게 國書를 보

29) 『殊號事略』(『新井白石全集』第四, 國書刊行會, 1977, 627~628쪽). 강조점은 인용자가 추가하였다.

30) 이해진, 주 7) 논문, 311~317쪽. 『本朝通鑑』의 조일 국교회복 관계 기사는 야나가와 잇켄 당시 國書 개작의 혐의로 유배되었다가 1658년에 풀려난 기하쿠 겐포(規伯玄方)로부터 가호가 조일 외교의 내력을 채록한 『方長老朝鮮物語附柳川始末』를 참조한 것이었다.

31) 하쿠세키의 역사학이 린케(林家), 특히 가호의 역사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宮崎道生, 「林家史學と白石史學」, 『日本歴史』 148, 1960; 安川夷, 「鵞峰史學と白石」, 『神道學』 85, 1975 참조.

내셨다.

이 해에 國書를 보내신 일은 이듬해에 통신사가 올 때 저들의 국왕이 올린 글과 禮曹에서 우리나라 執政에게 보낸 글에도 보인다. 그 외에 大明과 조선의 史書에도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전해지지 않아 믿기 힘든 바였기에 對州에 심문하였더니,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도 12년(1607)에 도착한 저 나라의 글들에 보이는 바와 같았다. 이때의 國書는 승려 조타이가 초안한 것으로 보이나, 그 초안이 분실되어 찾아보아도 확인할 수 없었다.³²⁾

이처럼 下卷은 임진왜란의 종전 후부터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왔던 쓰시마 측에게 이에야스가 1601년에 양국의 화의를 주선하도록 거듭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야스의 지시 이후에 파견된 사신(이시다)이 비로소 ‘동래부의 답서’(‘邊將’의 書契)를 받아왔다고 한다. 동시에 按文에서는 ‘邊將’의 書契에 적힌 ‘戊戌以後所送之价’라는 문언을 반영하여 1598년부터 쓰시마 측의 사신이 조선에 파견되었던 사실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민덕기는 『殊號事略』에 보이는 하쿠세키의 自論 변경에 관하여 “에도막부의 창시자인 이에야스가 처음으로 단행했다는 것이 되면 ‘복호’는 당연한 것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져, 그 결과 국왕호는 정통성을 가진 것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지적하였다.³³⁾ 민덕기의 설명대로 『殊號事略』의 下卷에서 하쿠세키는 “게이초 6년부터 우리가 해외의 여러 나라에게서 받은 書契와 表文 등에 보이는 칭호는 모두 日本國王殿下라고 칭하였다”³⁴⁾ 라고 하여,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이에야스가 일본의 패권을 장악한 이듬해부터 외교상에서 ‘國王’호가 사용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즉 下卷의 서술은 ‘국왕’호의 사용을 도쿠가와 創業史의 맥락 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생각해본다면 『殊號事略』의 下卷과 쓰시마번이 막부 創業史의 편찬 자료로 제출하였던 「朝鮮通交覺書」(내지는 「朝鮮通信之覺書」)가 이에야스의 국교회복 지시를 동일한 시기로 설정한 것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하쿠세키는 『國書復號紀事』 속에서 ‘게이초 5년 이전’에 강화교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邊將’의 書契가 도달한 시점은 쓰시마번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던 ‘경자년(1600) 겨울’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세키가하라 전투가 결착을 이룬 같은 해 9월보다 뒤의 시점에 배치하였다. 즉 쓰시마번이 제공한 기록이 허용하는 한에서 다소 임의의 해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³⁵⁾ 더욱이 『殊號事略』의 下卷도 강화교섭이 1598년부터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1601년에 이에야스의 지시를 받고 나서 파견된 사신이 ‘邊將’의 書契를 수령해 왔다고 하였다. 즉 이에야스의 지시를 국교회복이 진전되는 계기로서 강조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국교회복에 관한 서술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國書復號紀事』에서 『殊號事略』으로의 이행은 그동안 하쿠세키가 확인해 온 史實을 일부 후퇴시키면서 기존 도쿠가와 創業史觀과의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 『殊號事略』(『新井白石全集』第四, 國書刊行會, 1977, 630~631쪽).

33) 민덕기, 주 2) 저서, 331쪽.

34) 『殊號事略』(『新井白石全集』第四, 國書刊行會, 1977, 631쪽).

35) 실제로 ‘邊將’의 書契는 1600년 5월에 조선이 군관 金達 등을 쓰시마로 보내 전달하였으며, 이와 함께 요시토시와 시게노부에게도 書契가 보내어졌다. 이후 조선이 요시토시와 시게노부에게 받은 답신에 다시금 회답한 것이 1600년 9월 1일이기에, 쓰시마가 ‘邊將’의 書契를 수령한 시점은 여름 무렵이 된다(荒木和憲, 주 13) 논문, 5~6쪽 참조). 더욱이 ‘邊將’의 書契는 실제 수령자였던 고니시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하여 참수당했기에 실제 중앙의 도요토미 정권으로 전달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荒木和憲, 「조일 강화 교섭과 정탐사(偵探使)」, 『공존의 인간학』 3, 2020, 151쪽).

한편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는 물결선 부분의 서술에 주목하여 『殊號事略』 속에서 하쿠세키가 ‘國王’호 사용의 모델로서 제시한 ‘家康 國書’의 실재 여부가 1607년 통신사가 가져온 개작 이전의 宣祖 國書와 禮曹參判 吳億齡 書契의 내용에 근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하쿠세키가 개작 이전의 吳億齡 書契는 어디에서 확인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宣祖의 國書는 『隣交始末物語』를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³⁶⁾

그런데 하쿠세키는 宣祖의 國書가 에도막부의 성립 이후 조선 측이 외교문서에서 쇼군을 ‘國王’으로 칭한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全文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殊號事略』의 上卷에는 ‘奉書’로 개작된 宣祖 國書의 도입부를 수록하였다.

사실 『隣交始末物語』를 참조하기 전부터 하쿠세키는 이미 두 종류의 宣祖 國書가 존재함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711년 1월 교토에서 조선 관계의 사적을 조사할 때, 하쿠세키는 이전에 이테이안(以酊庵) 승려를 역임하였던 도후쿠지(東福寺)의 승려 쇼온 겐토(松陰玄棟)로부터 『善鄰國寶記』의 版本과 함께 그 이후 시기의 외교문서를 수합한 『續善鄰國寶記』를 손에 넣었다.³⁷⁾ 이 중에서 『續善鄰國寶記』가 수록한 개작된 宣祖 國書의 欄外 주석에는 “對州本은 ‘奉書’를 ‘奉復’이라고 썼다”는 필기를 비롯하여 일본 국내에 전래하는 사본과 쓰시마번의 사본 사이에 보이는 차이를 지적하였다. 이를 참조하였다면 하쿠세키가 일찍부터 宣祖 國書의 개작을 눈치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후일에 이르러 『隣交始末物語』의 열람으로 재확인한 개작 이전의 宣祖 國書 내용을 ‘家康 國書’의 실재 근거로서 요약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은 하쿠세키의 ‘復號’ 논리 구축 과정에서 다소간의 사실 은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4.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상 본문에서는 18세기 초 쓰시마번의 기록과 하쿠세키의 저서 속에 담긴 조일 국교회복의 경위에 관한 역사서술을 살펴보았다. 당시 쓰시마번의 기록들은 조일 통교를 막번 관계 성립기에 정해진 고유의 역할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번의 이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막부에 제출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쿠세키의 『國書復號紀事』와 『殊號事略』은 본인이 추진한 ‘國王’호 개정의 명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집필한 외교사였다. 이처럼 서로 목적은 달랐지만, 양측의 역사서술은 모두 이에야스의 국교회복을 원형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공유하였다. 나아가 양측의 역사서술은 모두 현실 정치적인 목적을 수반하는 것이었기에, 기존 기록과의 절충이나 서술적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18세기에 쓰시마번이 막부에 제출한 기록들이 지닌 특징은 국교회복 당시의 외교문서를 사료로 취급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참조한 하쿠세키는 자신의 주장

36) 米谷均, 주 9) 논문, 26~27쪽. 또한 요네타니는 『殊號事略』 下卷에 개작 이전 吳億齡 書契에 기재된 “貴國王先奉咫尺之書”(『新井白石全集』 第四, 國書刊行會, 1977, 639쪽)라는 문구가 실제로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37) 현재 일본 宮内廳 書陵部に 전하는 ‘新井白石 舊藏本’에 포함된 『善鄰國寶記』의 권말에 “『善鄰國寶記』 3책 古本은 도후쿠지 난쇼인(南昌院) 院主 장로 겐토가 나를 위해 朱墨으로 교정하여 옛 음을 밝혀주었다. <직접 적음> 호에이(寶永) 신묘년(1711) 孟春[1월] <기미요시(君美)[하쿠세키]> 洛陽[교토] 객관에서 적다”라는 기록이 있다(『新井白石旧藏本』 展示目錄, 宮内省書陵部, 1981, 12쪽 참조). 한편 현재 전하는 『續善鄰國寶記』(일본 國立公文書館 디지털 아카이브, 청구번호 184-0221)의 속표지에도 “호에이 신묘년 孟陬日[1월]” 및 “慧山 松陰玄棟 편집”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1711년 1월 교토에 있던 하쿠세키가 겐토로부터 두 기록을 함께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을 관찰하기 위한 사료를 조달하여 외교사 집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세 부적인 면에서는 번 측의 기록과 다른 서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이에야스의 지시를 받은 쓰시마 측의 중재로 국교회복이 이루어졌다는 큰 프레임은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의 막부 편찬 사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8세기에 성립한 하쿠세키의 저서들이 막부의 편찬사업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쓰시마번 측의 기록들도 참고 자료로서 두루 활용되었기 때문이었다. 19세기에 성립한 막부 편찬 사서의 조일 국교회복 서술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추가로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래 총 5장으로 계획하였던 본 발표 중에서 여건상 다루지 못한 제4장의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① 白石가 보인 朝鮮觀의 굴절

『殊號事略』의 탈고로부터 1년 전인 1715년에 하쿠세키는 「朝鮮聘使後議」라는 기록을 집필하여 막부에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하쿠세키는 다음과 같이 국교회복을 이에야스가 조선에 베푼 ‘再造之恩’이라고 이야기한다.

도쇼구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전대의 그릇된 바를 고치신 것을 전하고, 또한 조선의 남녀들이 우리 병사들로 인해 사로잡힌 것을 돌려보내신 것이 전후 3천 명에 이르니, 이윽고 양국의 和平이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우리와 저 나라의 동서 인민들이 兵禍를 잊은 지 이미 백 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再造之恩을 저 나라의 군신이 오래도록 잊어서는 안 될 터이다. (중략) 그런데 저들 통신사는 애당초 武로는 저들 나라가 당해낼 수 없음을 부끄러워하여 어떻게 해서든 문으로써 우리보다 우월함을 다투고자 한다. 저 사신들을 맞이하는 것은 본디 양국의 우호를 위한 것인데, 그 불손한 바를 책망하지 못하였다.³⁸⁾

이러한 조선 인식을 바탕으로 하쿠세키는 조선은 오랫동안 교린을 맺을 나라가 못 되며, 더구나 재정 부담도 심각하니 굳이 사신을 맞이한다면 양국의 국경인 쓰시마에서 맞이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른바 易地聘禮論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再造之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야기한 바가 강화 이전에 “명의 병사가 계속 저 나라에 체류하여 그 장졸들이 國人을 업신여기는 일”로 인하여 조선이 고심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서술은 앞에서 살펴본 『國書復號紀事』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쿠세키의 역사 인식이 어디에 연원을 둔 것이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② ‘家康 國書’의 실재 여부에 대한 쓰시마번 내의 비판

하쿠세키가 저서 속에서 ‘國王’호 사용의 원형으로 제시한 ‘家康 國書’에 대하여, 쓰시마번 내에서는 이른바 ‘方長老의 記’(『家康公初命和睦次第并信使來朝事』)의 “게이초 11년(1606) 丙午, 쓰시마에서 사사로이 궤하여 內府[이에야스] 공의 서한을 지어내고 國命을 칭하여 사자를 보내었다”는 서술을 중심으로 재고가 이루어졌다. 먼저 쓰시마 소 가문의 족보인 『宗氏家譜』의 편찬에 종사하였던 스야마 도쓰안(陶山訥庵)이 후일의 개정에 대비하여 정리한 『考證錄』에서 출발하여, 마쓰우라 가쇼(松浦霞浦)의 『朝鮮通交大紀』 또한 저자의 按文을 통해 ‘家康 國書’의 실재를 주장하는 하쿠세키의 역사서술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호슈의 『隣交始末物語』가 개작 이전의 宣祖 國書を 수록하였던 것처럼, 『朝鮮通交

38) 「朝鮮聘使後議」(『新井白石全集』第四, 國書刊行會, 1977, 679~680쪽).

大紀』 또한 본문에서는 家康 國書의 송부를 통해 국교회복이 진전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쓰시마번의 正史와 秘史가 각각 다른 역사서술을 보이고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토론문】

조일 국교회복에 관한 18세기의 역사서술
: 新井白石와 對馬藩의 기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별지

제3발표

근세 조일 관계와 쓰시마 번의 재판역 —조일 외교 절충 에서의 재판역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 : 이형주(국민대학교)

토론 : 허지은(서강대학교)

【제3주제】

[박사학위논문 소개]

근세 조일 관계와 쓰시마 번의 재판역
—조일 외교 절충 에서의 재판역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형주(국민대)

1. 연구의 배경

근세 조일 관계는 ‘선린우호’라는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한 번도 없었으며, 통신사와 문위행과 같은 외교 사절이 양국 사이를 왕래했다. 하지만 이 260여 년에 걸친 양국 사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란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선린우호’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는 양자 간의 대립과 갈등을 내포하며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소멸시켜 가는 과정 또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에 포함된다. 양자의 대립은 어떻게 원만히 해결되었는가 혹은 한 쪽의 일방적인 요구는 어떻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었는가 등에 대해서도 규명할 필요성이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위의 과정은 조일 사이의 교섭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었는데, 왜관에서 조일 교섭을 담당한 것이 바로 쓰시마 번의 재판역(裁判役)이었다.

2. 연구 대상: 쓰시마 번의 재판역

재판역은 왜관의 구성인원 중 오로지 조선과의 외교 절충을 위해 파견되는 직책이었다. 재판역이 이 담당할 임무로는 우선 재판역이 전담하는 특정 교섭 사안이 있었다. 조선이 쓰시마에 대한 무역 대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공목(公木) 대신 기간 한정으로 지불하는 쌀, 다시 말해 공작미(公作米)의 지불 기한 연장 교섭과 문위행 및 통신사의 도항에 관련된 여러 교섭이다. 이에 더해 재판역은 조일 간에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그때그때의 여러 문제에 관한 교섭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담 사안을 포함해 다양한 조일 교섭에 관여하고 있던 것이다.

재판역이라는 직책은 근세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보이지만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1678년에 성립된 쓰시마 번의 사료 『和館事考』에서는, 재판역에 관해 ‘往古者今難考也、壬辰之前掌其職者柚谷盛廣其人也’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예전 일은 상세하지 않지만, 임진(1592)년 이전에 유타니 모리히로(柚谷盛廣)가 임명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타니라는 사람이 어떠한 경력을 통해 임명된 것인가, 당시 재판역은 상설된 직책으로 조선과의 교섭에 투입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유타니 혼자 임시적으로 임명된 직책이었는가 등,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비해 근세 재판역의 피임명자들은 1705년부터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裁判記録』이라고 하는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였으므로, 그 임명부터 임무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일기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남아있다. 물론 1705년 이전에 관해서도 여타 사료를 통해 부분적이거나 재판역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근세 여러 사료에서 보는 한, 재판역은 쓰시마 번 내부에서도 조일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위의 『和館事考』에서는 ‘兩國交際主管之職、而不可無其人焉者也’, 즉 ‘양국 교제를 주관하는 직책으로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1687년 쓰시마 번의 오메쓰케(大目付) 가시마 효스케(賀島兵助)가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朝鮮役之内にて、裁判は何

役より大切な役に御座候’, 즉 ‘조선에 관련된 직책 중 재판은 어느 직책보다 중요한 직책’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쓰시마 번의 가로로 활약한 오모리 시게에몬(大森繁右衛門)같은 경우, 재판역을 ‘朝鮮御通交之義ハ其御役儀ニ被爲附候而ハ、裁判役之儀者第一之御道具ニ而御座候’, 다시 말해 ‘조선 통교에 관해 그 직책으로 말하자면 재판역은 제일의 도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세의 재판역은 쓰시마 번의 조선 외교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것이다.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목표

위와 같은 재판역이 조일 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충분치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다.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이하와 같다.

먼저 오사 마사노리(長正統)의 연구가 재판역관련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현재도 후속 연구들이 해당 연구를 참조하고 있다. 오사는 직무 개요, 기원, 피임명자의 신분 변화, 대리인 파견, 파견 수순, 업무기록 등 재판역의 직무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파견 명목에 따라 재판역을 분류하여 제시했다. 즉 ①信使迎送裁判, ②譯官使迎送裁判, ③公作米年限裁判, ④幹事裁判이다. 또한 왜관에 파견된 재판역을 시대순에 따라 표로 정리하기도 했다. 특히 『裁判記録』이 처음 작성되기 시작한 1705년 이전 시대에 관해서는 위의 표를 통해 재판역의 파견과 활동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사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견을 제시한 것이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의 연구이다. 재판역은 17세기 중반에 기존의 조닌(町人)에서 무사계급(士分)으로 피임명자의 신분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오사가, 조선이 재판역에게 제공하는 ‘所務’, 즉 조선 측이 제공하는 지급물에 의한 수입이 각별히 좋았기 때문에 무사계급을 재판역으로 임명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시로는 공작미 지급 기한 연장 교섭이 17세기 중반에 재판역의 임무로 새로 추가되었던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이 이즈미 조이치(泉澄一)의 연구이다. 이즈미는 쓰시마 번이 사자 파견이라는 형태로 가신들에게 제공했던 ‘扶助(경제적 원조)’에 주목하고, 재판역의 임명에 있어 외교적 능력보다 扶助가 우선시되었던 실태를 지적했다. 그리고 ‘외교의 요체로서의 재판역의 중요성’을 언급한 오사와, ‘조선 사정에 능통한 유능한 인재를 이용해야 했다’고 하는 다시로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쪽에서도 재판역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홍석덕은 별차왜(別差倭)에 관한 연구에서 재판역을 언급하고 있다. 1609년 기유약조에 따라 세건선 숫자가 정해졌지만, 쓰시마 번에서는 여러 명목으로 별차왜(규정 외 사절)를 파견하고 있었다. 홍석덕은 그 접대 부담에 고민하던 조선 정부가 1680년을 전후하여 별차왜의 규제에 나섰고, 외교 의례를 수행하는 일부의 별차왜는 존속시킨 채, 외교적 중요성이 높은 사안을 재판역에 집중시키는 형태로 별차왜를 재편했다는 점을 논했다.

또한 이해진은 재판역의 왜관 장기체류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을 밝혔다. 왜관에 파견된 재판역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접대 내용과 비용 등을 제시하고, 조선 정부의 접대 부담이 상당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다음, 그 대응책을 논한 연구로서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윤유숙에 의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윤유숙은 주로 幹事裁判의 활동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오사에 의한 재판의 분류가 명확해지는 것은 18세기 초 이후임을 지적한 후, 재판역 연구는 개별적인 활동 레벨에서 재고되어야 함을 논했다. 또한 18세기 후기에 조일 간에 쟁점이 되었던 사안과 그 전개 양상을 규명하기도 했으며, 1811년 역지통신 교섭에서 재판역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도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목표로 삼은 것은, (1)재판역 연구에 관한 기본자료를 갱신하는 것(오사), (2)재판역이 양국 외교에서 수행한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즈미), (3)재판역 제도의 변천과 그 의미를 밝히는 것(오사), (4)재판역 연구의 사례축적에 공헌하는 것(오사, 윤유숙)이다.

4. 연구의 성과

제1장 17세기의 재판역—쓰시마 번과 조선의 외교절충 담당관— [연구목적(1)(3)]

17세기 단계에 파견된 재판역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는 재판역의 업

무일지인 『裁判記録』이 1705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사는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에서 에도시대에 파견된 재판역의 일람표를 작성했다. 하지만 17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전거사료가 불분명하며, 파견 일시와 피임명자의 명부 등을 살펴보면 사실과 괴리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후속연구에서는 오사의 일람표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에 제1장에서는 사료에 근거하여 오사의 일람표를 갱신하고(17세기 부분), 17세기 재판역의 임용실태를 개간한 뒤, 그 시기 구분을 시도했다.

①재판역은 1651년까지는 1명이 장기간 근무하고, 외교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은 후에야 비로소 조선 정부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조닌이 임명되는 직책이었다. ②하지만 1651년부터는 재판역에 임명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무사계급도 재판역에 임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근무 기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③더욱이 1678년부터 1704년까지는 항상 2명의 무사계급이 짧은 기간 동안 임명되는 직책으로 정착되었다. 이는 재판역에 임명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게 된 이익을 가능한 한 많은 가신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임명 방식은 가시마 효스케의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2명 임명 방식은 계속되었지만, 2명 중 1명을 장기간 근무시키면서 나머지 1명을 한 두 번의 파견으로 교대시키는, 가시마의 비판이 일부 반영된 형태로 존속했다. ④하지만 1705년에 『裁判記録』이 작성되기 시작하면, 오랜 경험을 가지지 않는 재판역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막부 말기까지 1명의 재판역이 한 번의 파견으로 교대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재판역은 개인의 수완에 의존하는 직책(①)에서 과도기를 거쳐(②) 경험에 의존하는 직책이 되었으며(③), 결국에는 경험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직책으로 변화해 간 것이다(④).

제2장 18세기 왜관의 조일교섭과 쓰시마 번의 재판역 [연구목적(2)(4)]

제1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18세기 재판역의 조일 교섭 양상을 분석했다. 사례로는 1783년에 파견된 재판역이 담당한 문위행 일행 수 확정을 둘러싼 교섭을 이용했다. 해당 사례에서 재판역은 여타 18세기의 재판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외교의 스페셜리스트’로 불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왜관에 비치된 『裁判記録』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선과의 교섭에 임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재판역의 문서주의 내지 증거주의적인 교섭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18세기의 재판역은 번 차원에서 정비 및 축적된 기록의 존재에 힘입어, 조선 외교 경험을 가지지 않는 가신이라도 기록을 참조로 하며 조선 외교라는 중임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사례에서 재판역이 번 당국의 교섭 방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번 당국과 조선 측 사이에서 절충안을 제시하여 교섭을 타결시켰다는 점에서 재판역이 조일 교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도 확인했다.

제3장 18세기 중엽의 재판역 파견에 관해—1736년 오일잡물 교섭을 사례로— [연구목적(2)(4)]

이상의 성과에 입각하여 18세기 중엽 조일 외교에서 재판역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이즈미 조이치는 기존 재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에 대한 재고를 재촉했다. 재판역의 임명에는 피임명자에 대한 ‘扶助’가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즈미는 그 임명에 있어서 외교 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닌 이상, 재판역이란 결국 내실이 따르지 않는 직책이었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에 제3장에서는 1736년에 있었던 오일잡물(일본인 표류민에게 조선 정부가 지급하는 구호물자) 교섭을, 교섭 담당자를 둘러싼 사전 논의에서 실제 교섭까지 분석했다. 조선 측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오일잡물 지급 신규정을 쓰시마 번이 구례로 복귀시키기 위한 교섭이었다.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 이전, 왜관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와 번 당국은 교섭 담당자를 둘러싸고 논의를 했다. 호슈의 주장이란, 재판역은 ①동래부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②조선 정부에게는 교섭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①과 ②는 왜관의 상주인원인 관수(왜관의 대표자)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효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처음 관수로 임했던 교섭에서는 ①과 ②의 효과는 얻지 못했으며, 추후에 재판역이 파견됨으로써 조기 귀국을 조건으로 동래부 측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게 되었고(①), 조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것이 오일잡물 지급 규정을 구례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었다(②).

위의 ①과 ②와 같은 효과는 다른 직책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이것이 쓰시마 번의 조선 외교에서 재판역이 갖는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교섭 담당자를 둘러싼 사전 논의에서는 ‘누구’를 교섭에 임하게 하느냐가 아닌, ‘어느 직책’을 교섭에 임하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역은 ‘사람’이 아닌 ‘직책 그 자체’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었으며, 그 임명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사실이, 재판역이 조일 외교에서 갖는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을 논했다.

제4장 18세기 말 재판역의 대리인 파견에 관해 [연구목적(3)(4)]

재판역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대리인 파견이 빈번해진다. 오사는 ‘시대의 추이와 함께 藩制 기구 속 여러 직책들이 점차 榮職化하면서 재판역도 그 경향을 피하지 못했고, 항상 이 복잡하고 과격한 직무의 실체에 적합한 인물을 직접 보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취해진 편의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4장에서는 처음 재판역의 대리인이 파견된 사례를 분석했다. 이 사례를 계기로 대리인 파견이 빈번해진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당초부터 재판역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히라타 아사에몬(平田淺右衛門)이라는 가신에게 번 당국이 먼저 대리인 파견을 인정하고 제안한 것은, 전례에 없는 특별 조치였다. 이는 히라타에게 ‘앞으로 더욱 정근’하라는 뜻에서 히라타에 한해 1회성으로 시행된 일종의 특별 배려였다. 번 당국은 왜관 근무가 곤란해진 히라타 대신 다른 가신을 새 재판역으로 임명하지 않고, 히라타를 재판역에 임명한 채로 대리인을 실제 업무에 임하게 했는데, 이는 히라타에 대한 무언가의 편의 제공에 동기가 있었다. 그리고 히라타 이후에 대리인을 인정받은 사례를 보아도, 사료에서 확인되는 한 모두 내정자가 실제 파견이 급작스럽게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 대리인이 왜관으로 파견되었다. 다시 말해 실제 재판역의 임무에 적합한 인물을 조일 교섭에 투입하기 위해 대리인을 파견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물론 이렇게 대리인 파견이 빈번해진 것은, 제1장~제3장에서 밝힌 듯이 재판역은 반드시 개인의 수완과 외교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직책이며, ‘사람’이 아닌 ‘직책 그 자체’로도 충분히 중임을 완수할 수 있는 직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제5장 왜관에서의 재판역의 선물 증정과 향응

그렇다고 해서 재판역이 단순히 자신의 직책에만 의존하면서 교섭에 임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근세 조일 외교의 현장인 왜관에서의 의사소통은 ‘왜관⇔왜학역관⇔동래부사⇔경상도관찰사⇔조정’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왜관 측에서 본다면, 외교 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조정은 물론, 교섭 사안을 접수하여 조정으로 보고(계문)하는 동래부사, 그 동래부사의 상관이면서 계문이 경유하는 경상도관찰사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피하기 힘든 ‘비효율적인’ 구조였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역은 향응과 선물 증정을 이용하여 평소부터 왜학역관을 비롯한 조선 관리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힘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향응을 베풀거나 선물을 증정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전달 사항을 주지시킨 사자를 파견하면서, 통상적인 루트로의 의사소통을 피할 수 없는 동래부사, 나아가서는 경상도관찰사와의 의사소통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통상적이지 않은 루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재판역은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근세 쓰시마 번의 재판역 임용방식을 검토하고, 활동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근세 조일관계의 모습을 밝혀내는 것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재판역은 17세기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직책에서 점차 기구로서 기능하는 직책으로 변화해 갔다. 18세기에 들어서는 조선 외교 경험을 가지지 않은 가신들도 정비된 기록을 참고로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재판역이라는 직책 그 자체가 가져오는 효과를 통해 조일 교섭에서의 중요 직책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교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역은 조선 측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에 힘쓰면서 이를 통해 양국의 대립이 원만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으며, 또한 번 당국과 조선 측으로부터도 이러한 역할을 기대받고 있었다. 근세 조일 관계가 ‘선린’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사이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립과 마찰을 최종적으로는 원만한 해결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만한 해결은 재판역의 노력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5. 앞으로의 과제

학위 논문에서는 재판역에 집중함으로써 근세 조일 교섭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다만 재판역만으로는 근세 조일 교섭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쓰시마 번에서도 재판역을 조일 외교에서의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본 연구의 취지도 재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쓰시마 번이 왜관에 파견하는 여러 사자들 중, 오직 재판만이 ‘외교의 실체면’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참판사(參判使, 대차왜)가 그러하다. 참판사란 쓰시마 번에서 번주가 아닌 막부의 명의로 파견하는 사자였다. 새 쇼군의 습직을 알리는 大慶參判使(關白承襲告慶差倭)와 같이 조일 사이의 복잡한 외교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참판사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역지통신 교섭 시기에 파견된 議聘參判使(通信使議定差倭)와 같이 실제 외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예상되는 참판사도 존재했다. 재판역과 함께 참판사의 활동도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재판역과 참판사가 다른 차원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하면서 파견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사료도 있다. 다음은 1726년 11월 7일 번 당국이 관수와 재판역에게 보낸 서장의 일부다.

以前方重キ御用ニ付參判使被差渡候節ハ御用取扱之ため裁判被相附候…折節幾度六郎右衛門諷官致迎送并御兎名図書之御用相兼罷渡候ニ付、采女方御用之儀是又勿論承可申事与存候、

이전부터 중요한 임무로 참판사를 파견할 때는,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재판역을 붙였습니다…마침 기도 로쿠로에몬이 문위행의 이동과 아명도서 문제를 겸하기 위해 건너가 있으니, 우네메의 임무 또한 물론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전부터 참판사가 파견될 때는 이와 관련된 교섭을 담당시키기 위한 재판역을 함께 파견했지만, 이번에는 이미 기도 로쿠에몬(幾度六郎右衛門)이 재판역으로 왜관에 파견되어 있으니 별도로 재판역을 파견할 필요 없이 기도가 참판사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가 맡은 교섭 임무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재판역과 참판사는 무언가 연동성을 갖고 있었으며, 위의 사료대로 재판역이 참판사의 역할을 대행하는 의미에서도 파견되었다면, 조일 외교에서 재판역이 갖고 있던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욱 크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참판사 또한 재판역과 마찬가지로 선행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사례 축적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참판사기록’류를 수집하고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참판사와 재판역을 통한 근세 조일 교섭의 전모 내지는 참판사와 재판역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 나가도록 하겠다.

李炯周 「近世日朝關係と對馬藩の裁判役—日朝外交折衝における裁判役の役割を中心に—」, 名古屋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学位(歴史學, 過程博士)論文, 2022, 지도교원: 池内敏.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강사.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736, 소장문서번호: 4381.

瀧本誠一 編 『日本經濟叢書』二六(日本經濟叢書刊行會, 1916)에 「賀島兵介言上書」로 수록.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636, 소장문서번호: 3796.

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50(4), 1968.

통신사의 왜관과 쓰시마 번 사이의 왕복 및 파견에 관한 교섭을 담당.

문위행의 왜관과 쓰시마 번 사이의 왕복 및 파견에 관한 교섭을 담당.

공작미의 지급 기한 연장 교섭을 담당.

그 외 ①~③에 포함되지 않는 오일잡물, 인삼 품질 등과 같은 교섭을 담당.

田代和生「草梁倭館の設置と機能」『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泉澄一「対馬藩士の朝鮮使行と「扶助」について」, 『史泉』 81, 1995.

홍성덕「十七世紀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全北史學』 15, 1992.

이혜진「17세기 후반 朝日外交에서의 裁判差倭 성립과 조선의 외교적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8, 1998.

윤유숙「조선후기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활동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 同「18세기 후반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교섭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6, 2019
; 同「역지통신교섭기 간사재판 시게마쓰 고노모(重松此面)의 활동 검토」, 『향도부산』 43, 2022.

『裁判記録 五』, 1726년 12월 12일.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14.

또한 1765년 쓰시마 번 당국은 시마오 다다에몬(嶋雄只右衛門)을 재판역으로 파견하면서, 참판사(別使)의 파견은 번거롭기 때문에 그 대신 재판역으로 파견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서도 재판역과 참판사의 파견이 연동성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론문】

근세 조일 관계와 쓰시마 번의 재판역
—조일 외교 절충 에서의 재판역의 역할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허지은(서강대)

별지

【한일관계사학회 보고사항】

1. 2023년 학회 월례발표회

- 제205회 월례발표회 : 2023년 3월 11일(토)
- 제206회 월례발표회 : 2023년 4월 8일(토)
- 제207회 월례발표회 : 2023년 5월 13일(토)

2. 《한일관계사연구》 80집 발간

- 《한일관계사연구》 80집이 2023년 5월 3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1집은 2023년 8월 31일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때 심사비 6만원(심사자 3인)을 입금해 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논문게재비는 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입니다.

3.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 | |
|--------|------------------------|--------------------|
| [종신회비] |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
| [연회비] | •일반회원 : 3만원 | •기관회원 : 4만원 |
| |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 |

[계좌번호] 국민은행 217002-04-676500 <예금주> 조인희